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나?

2008년 11월 28일, 오후 3시-6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희망터'

• 주최



• 후원



[토론회 순서]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가?

사회: 이영희 본회 상담기관운영협의회 의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현장사례발표 (3:05-4:10)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박주영 경기원스톱지원센터 팀장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최박미란 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안전권리 침해문제와 대책

배인숙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 상임대표

발표4]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현황과 과제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 과제 종합토론 (4:20-5:20)

토론 1] 경찰초기개입 지원과 효과 신동욱 경감 (경찰청 여성계)

토론 2]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방안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3] 피해자 안전확보 제도 현황

박동혁 사무관 (여성부 인권보호과)

토론 4] 피해자 안전권리 확보를 위한 연계망 구축

황정임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질의 및 자유토론 (5:20-6:00)

[자료집 순서]

▶ 현장사례발표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7p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17p

-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의 초기개입 설문조사 --35p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57p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안전권리 침해문제와 대책 --82p

발표4]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현황과 과제 --91p

▶ 과제 종합토론

토론 1] 경찰초기개입 지원과 효과 --111p

토론 2]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방안 ---126p

토론 3] 피해자 안전확보 제도 현황 ---134p

토론 4] 피해자 안전권리 확보를 위한 연계망 구축 ---142p

▶ **별첨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149p

-가정폭력 추방정책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2006)에서 수집-

현장 사례 발표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박주영 경기원스톱지원센터 팀장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최박미란 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안전권리 침해문제와 대책

배인숙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 상임대표

발표4]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현황과 과제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 발표 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박주영

경기원스톱 관리운영팀장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폭력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어느 날 센터를 방문한 이주여성은 6세의 여아의 엄마였고, 임신 9개월로 예정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 센터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서를 작성하고 이주민 쉼터로 연계를 하였다.

약 40개월 된 아동이 거의 영양실조 상태로 방문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일을 나간사이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굶기고, 울거나 하면 때리거나 할퀴는 등의 지속적인 학대를 하였는데, 아버지도 집에 있는 시간에는 심하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며, 아이가 상처가 있을 경우 왜 그러냐고 하면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낸 거라 하는 등 보호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함. 아이는 치료 후 아동보호기관과 연계되어 추후관리를 받고 있음

I. ONE-STOP지원센터

1. 추진배경

- 2005년 8월 개소된 서울 경찰병원의 [학교·여성폭력 one-stop지원센터]1개소로는 전국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
-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여 상담, 의료, 법률·수사서비스를 통합 자원하는 방안 필요

2. 기본 추진방향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계 구축
- 협조 가능한 가용 인력·시설 등 활용으로 예산 최소화
 - 시도 : 예산확보, 피해자 의료비, 법률구조비 지원
 - 지방경찰청 : 수사지원 파견근무(여경 3인이상, 24시간 교대근무)
 - 센터 설치병원 : 시설공간(20평이상) 및 의료인력 협조
- 기존 유사 기능을 하는 시설이 없는 지역에 단계적 설치
 - 1단계('05. 12월) 8개소, 2단계('06년) 6개소등 15개 설치완료 ('08.05)

3. 운영체계

*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 3자 공동협약 체결

- 시도 : 예산 및 사업위탁 주체, 지방경찰청과 센터 공동운영
- 지방경찰청 : 시도와 공동운영, 수사관련 우선적 책임 운영
- 수탁병원 : 사업운영 및 관리,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의료관련 우선적 책임 운영

4. 지원방법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의 one-stop 통합지원
여성가족부의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비 등 활용

5. 현황

| 시 도 | 센 터 병 원 | 전 화 번 호 | 주 소 |
|-------|---------|--------------|-------------------------|
| 경기 | 아주대병원 | 031)216-111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
| 경기북부 | 의정부의료원 | 031)874-3117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번지 |
| 서울 | 경찰병원 | 02)3400-1117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 |
| 부산 | 부산의료원 | 051)805-0117 | 부산 광역시 중구 태화동 123-3번지 |
| 경북 | 안동의료원 | 054)843-1117 |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동 470번지 |
| 울산 | 동강병원 | 052)246-3117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23-3번지 |
| 강원 | 강원대병원 | 033)243-8117 |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7-1번지 |
| 충북 | 청주의료원 | 043)272-711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번지 |
| 전북 | 전북대병원 | 063)278-0117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번지 |
| 인천 | 인천의료원 | 032)582-1170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8-1번지 |
| 대구 | 대구의료원 | 053)556-8117 | 대구 광역시 서구 평리로 454번지 |
| 대전·충남 | 충남대병원 | 042)280-8436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640번지 |
| 광주·전남 | 조선대병원 | 062)225-3117 | 광주광역시 동구 사직동 588번지 |
| 경남 | 마산의료원 | 055)244-8117 |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 3가 3번지 |
| 제주 | 한라종합병원 | 064)749-5117 | 제주시 연동 1963-2번지 |

6.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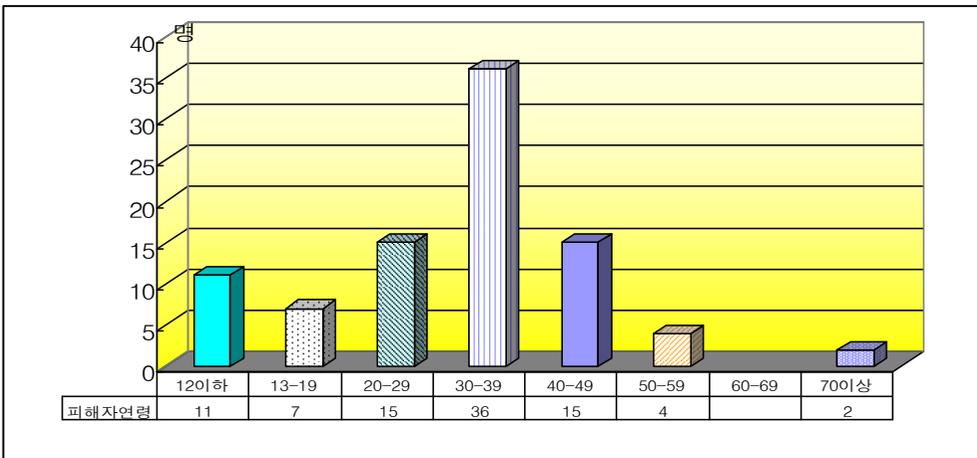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 지원방법 :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24시간 연중 무휴
 - o 상담지원 : 위기상담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RAPPORT형성)
 - o 의료지원 (법적근거)
 -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II. 경기 원스톱 가정폭력 실적(2007년)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 경기원스톱 지원센터 2007년 가정폭력 실적

- 접수건수 90건
- 상담 321건, 진료 85건, 진술녹화 2건, 피해자조서 9건, 법률지원 19건, NGO연계가 65건
- 인지경로
 - 경찰서 20건, 관련상담소 5건, 의료기관 55건, 대중매체 2건
 - 주위사람 3건, 기타 5건



Ⅲ.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1.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근거법령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8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 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 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⑤ 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 명시된 기타의료의 범위는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시행규칙에는 치료보호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 행사는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006년 4월 26일 법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종 전 | 변 경 |
|----------|--|---|
| 치료보호비 지급 | · 국가 또는 지자체는 행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 할 수 있음 | · 국가 또는 지자체는 피해자가 치료보호비 신청 시 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
| 구상권 행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여야 함.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3. 기타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 가능

(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4.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3항에 명시되어 있음

IV. 가정폭력 발생시 연계 의료기관

1. 원스톱지원센터

- 2005. 8월 개소된 서울 경찰병원의 「학교·여성폭력one-stop지원센터」 후 현재 총 14개의 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됨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의 24시간 one-stop 운영체계 구축
- 응급실, 정신의학과, 산부인과를 갖춘 종합병원에 우선적으로 설치함
- 원스톱지원센터는 경찰, 상담소, 본인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 및 지원센터 내 상담사의 상담을 통하여 폭력사실 확인 후 의료지원 실시

2. 가정폭력피해자 무료진료기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 간의 협약체결

에 의하여 운영됨

지원범위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
 - 가정으로의 복귀전에 발생한 일상적 질병의 치료
 - 기타 피해자가 치료보호,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 등의 제도에 의하여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 고가의 특수장비 혹은 특수재료를 요하는 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장비 사용료와 재료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감면 범위는 피해자와 의료기관간의 개별 협의에 의함

V. 원스톱 제도의 효과와 보완점

경기ONE-STOP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서 신고 또는 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진술의 반복 등으로 야기되는 2차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의료지원, 수사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을 한곳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ONE-STOP지원센터를 방문한 피해자의 80%이상이 성폭력피해자이며, 20%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들로서 증거채취 등 위기개입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한 후 의료지원 및 수사지원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경찰서 신고, 119 이송, 응급실 의료진의 연결로 ONE-STOP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초기상담을 통해 의료지원과 관

련된 치료비의 구상권 행사의 임의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의료지원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들이 응급실에 치료만을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ONE-STOP 안내 받아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설명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습득하여 귀가 또는 신고, 상담소 혹은 쉼터 연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구상권 때문에 기피하거나 자비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마치 본인의 잘못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능력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 대상이 아내만이 아니고 아동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여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ONE-STOP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상담소 및 쉼터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의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야간에 방문하여 쉼터로 바로 연계가 어려울 경우 1366 일시보호소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ONE-STOP지원센터가 치료비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치료비지원과 관련되어 가정폭력 쉼터 뿐만 아니라 상담소에도 일정부분이 지원되어 연계되어진다면 많은 피해자에게 지원이 되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전국에 ONE-STOP지원센터는 2006년 부터 시작되어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 발표 2

가정폭력 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 상담소 현장에서의 가정폭력사건 피해현황과 경찰의 초기개입 관련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

최박미란

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1. 시작하며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의식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할, 폭력에 대한 예방활동 등 광범위한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

의식변화가 먼저인지, 관련 제도 정립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는 사회적 의식변화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식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무척 의미 깊은 해이다. 때문에,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에서는 법 시행 10년을 기념하며 가정폭력방지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각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역시, 지난 10월 28일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포럼(제목:가정폭력추방운동, 성과와 과제, 미래를 말한다)을 진행한 바 있다.

10년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은 법제정 당시 여러 가지 논란과 한계를 차지해 두더라도 그동안 사적인 폭력으로 치부되던 아내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범죄로 정의하고 국가의 개입을 법적으로 규명한 차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2007년 처벌법 개정을 거치면서 처벌법의 개정내용에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제대로 담보될지 우려스러운 일부 법안(경찰의 임시조치권 강화내용이 누락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점)이 통과된 한계는 있다. 10년의 평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법의 효과성이 낮고, 10년간 변화된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수혜적, 복지적 문제가 아닌,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권리’로서 공론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관련 법안과 함께 가정폭력 방지법에 그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 중 하나인, “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체계의 최일선인 경찰의 개입현황과 과제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와 그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한국여성전화연합에서 지난 해 11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때에는 주로 경찰의 초기대응 사례 일부를 예로 들어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는 상담소에서 접하는 피해자, 의뢰자 240명,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찰 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발표하겠다.

2.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의 중요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경찰은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책임 주체이며, 형사사법체계의 최 일선 기관이다.

가정폭력 사건발생 신고 후,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게 되는 경찰의 개입은 현장에서의 피해자 안전 확보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경찰의 조치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폭력 행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상담소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신고 후 경찰 개입에 대한 만족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빨리 도착하여 제지해 주었다.

-폭력을 멈춰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주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 주었다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고 나를 보호하였다

-친절하고 호의적이었다.

-짐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다.

< ‘경찰 신고의 만족도와 그에 대한 이유’ -가정폭력사건 피해현황과 경찰의 초기 개입 설문 중에서>

경찰의 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에 대한 신뢰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신변의 안전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경찰의 초기개입은 24시간 피해자가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공권력으로서 의미가 있고 피해자의 심적 안정과 신변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 안전에 관한 경찰에 대한 기대

3.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과 조치현황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경찰의 초기개입 역할은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 나와 있다. 제5조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의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 확인)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통보

1)경찰의 초기 현장 조치

경찰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현황에 대해 폭력행위 제지에 대해 91.8%,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에 86.3%,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 설명 84%, 현장보존조치83%, 현행범 연행에 81.1%의 조치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경찰조치를 대부분 80%이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현황 (경찰대상 중복 응답) | 524명 (대비율) |
|------------------------------------|-----------------|
| 폭력행위 제지 | 481명 (91.8%) |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 | 452명 (86.3%) |

| | |
|---|-----------------|
| 피해자에게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 안내 및 설명 | 440명 (84%) |
| 피해자들 관련 기관에 인도하고 동행 | 269명 (51.3%) |
| 현행법 연행 | 425명 (81.1%) |
|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사진 찍기 등) | 435명 (83%) |
|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줌 | 456명 (87%) |
|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가정폭력 특례법, 기타 필요한 정보를 설명했음 | 439명 (83.8%) |
| 그 외 조치 | 25명 (4.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화해를 많이 시키고 폭력의 심각성 등 교양함 • 접근 금지 조치 • 위로와 상담 • 어린자녀 보호 • 통상 가해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상담원 역할도 함 • 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하여 설득 후 칼을 영치함. 가족과 분리. 경찰이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하여 예방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다가 얼굴을 구타당함. 신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음 • 가족 간 상호 원만한 해결 도모 • 가정폭력 전단지(상담소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배부 • 가해자가 대부분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대화가 대치 않는 경우가 있음 • 처벌 이후의 내용 등 상담(같이 살 경우 벌금 등으로 처리) • 피해자의 의사를 물음 •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가족과 형제 등에게로 인계 • 학교에 나가 가정폭력 예방 강의 실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고지함 • 피해자가 보호시설 외 다른 곳을 원하여, 숙박업소로 동행한 경우도 있었음 • 폭행하고는 경우가 다름, 신고취하가 대부분 | |
|---|--|

그렇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상담소 현장에서의 피해자 설문조사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실제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각각의 조치에 대한 비율이 30%내외로 응답되었다.

물론, 동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경찰과 피해자의 경험과 인식이 다른 상태에서 단순 상대비교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들의 기타응답에는 ‘그냥 돌아감’, ‘남편하고만 대화하고 돌아감’, ‘나에게 훈계함’, ‘남편이 문을 안 열어 주어 그냥 감’, ‘부부싸움이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함’ 등 경찰입장에서의 조치경험과는 상당히 다른 응답결과들이 나타났다.

→ 피가 나지 않았다.

| 경찰의 조치 사항 (피해자 대상 중복응답) | 159명(대비율) |
|--------------------------------|-----------|
| 폭력행위 제지 | 59(37.1%) |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 | 39(24.5%) |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 안내 및 설명 | 50(31.4%) |
| 피해자를 관련 기관에 인도하고 동행 | 30(18.9%) |
| 현행범 연행 | 14(8.8%) |
|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사진찍기 등) | 20(12.6%) |
|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줌 | 49(30.8%) |
| 임시조치, 가정폭력특례법, 기타 필요한 정보를 설명했음 | 32(20.1%) |
| 기타 | 42(26.4%) |

| 경찰의 기타 조치사항들 (피해자 대상 설문) | |
|--------------------------|--|
| 긍정적 답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러 갈 때 동행 • 피해자의 집을 찾길 수 있도록 도와줌 • 100m 접근금지 신청가능함에 대해 설명해줌 • 남편에게 주의를 주고 피해자를 안정시킨 뒤 법에 대해 설명 • 신고 후, 경찰이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와 남편과 경찰서에 간 후, 조사한 후 경찰이 1366으로 데려 다 줌 • 옷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함께 동행 • 조사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줌 |
| 부정적 답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냥 보고 아무 일도 없다고 감 • 남편이 가정사라며 경찰에게 말을 해서 그대로 돌아감 • 부부싸움이라고 남편보고 참으라 하였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함 • 피해자가 피할 곳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안내해주지 않았음 (짚질방이나 가라고 했음) • 남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대화하고 피해자를 고소할 것인지 질문 •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함 • 가정사이니 서로 좋게 해결하고, 다음에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고 진단서내고 이혼하라고 함 • 신고를 다시 하라고 미룸 • 가정 일이라며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함 • 맞지도 않았는데 왜 신고했냐고 함 • 남편을 분리시키고 피해자도 잘못했다고 말함 • 남편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정도로 가볍게 처리 • 남편이 문을 안 열어 주어 그냥 돌아감 • 부부싸움이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함 • 남편과 이야기 나누고 그냥 감 • 없던 걸로 하였음 |

|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오기 전에 남편이 도망가서 출동이 취소 • 파출소에 부부를 데리고 가서 경찰에 고소하라고 함 • 조서를 꾸민 후 돌아감 • 파출소로 동행하여 조서를 작성함 •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함 • 고소할 것인지 물어봄 •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혼하라고 함 |
|----|---|

2)사건 개입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태도

경찰과 피해자간의 설문결과의 상당한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된 것일까? 그 원인중 하나는 아직도 가정폭력의 문제를 범죄가 아닌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찰 인식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 본다.

가정폭력 사건 개입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에서도 이러한 인식 단면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개입 시 드는 느낌과 생각에 대한 경찰 대상 조사에서 경찰의 절반이상은 피해자를 도울 방법과 범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일부 경찰들은 가끔씩 생길 수 있는 부부 싸움에 개입하는 것이 낫다라는 대답에 31.7%, 남편에게 대들거나 바람을 피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에 24.2% 응답비율도 함께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가정폭력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조치로 이어지며 피해자에게 많은 실망감과 어려움을 주게 된다.

또한 기타 응답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쌍방폭행이다라는 응답은, 가정폭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내폭력문제를 단순화, 희석화하고, 아내들의 방어적 행동에 대해 동일한 가해 책임을 묻는 쌍방폭행으로 해석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 | | |
|---------------------------------------|--|-------------|
| 가정폭력 사건 개입 시 드는 느낌과 생각 (우선순위 2개) | | 524명(대비율) |
| 남편(또는 아버지)을 신고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 | 31명(5.9%) |
| 가끔씩 생길 수 있는 부부싸움에 개입하는 것이 낄끄럽다. | | 166명(31.7%) |
| 남편에게 대들거나 바람을 피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 127명(24.2%) |
|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 | 295명(56.3%) |
|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다. | | 270명(51.5%) |
| 다른 사건도 많고 바쁜데 사소해 보여서 귀찮다. | | 8명(1.5%)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 후 경찰관에게 처벌 특히 벌금은 내도록 하였다고 따질 수 있으니 조치하기가 까다로움 •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여 폭력이 더욱 증가하고 실제 처벌을 하며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실정이다.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사실혼관계가 많으며 일시적 만남을 그만두기 위해 신고하는 사실도 많다. •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일방적 폭행이 드물고 쌍방 폭행이 있음 • 사회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가정폭력은 남자만의 가해 요인이 아니다. 여성도 증가추세에 있다. | 14명(2.7%) |

실제, 피해자 대상 조사에서 경찰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 18.9%, 비교적 적절하게 조치해 주었다에 44% 응답을 했지만 귀찮아하고 별 일 아니라는 듯 불평했다 24.5%, 나에게 훈계하고 비난했다에 5%, 가해자를 두둔했다 3.8%로 적지 않는 응답비율을 보였다.

| 경찰의 태도 현황 (피해자 대상 중복 응답) | 159명 대비율 |
|--------------------------|------------|
| 매우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 | 30명(18.9%) |
| 비교적 적절하게 조치해 주었다. | 70명(44%) |
| 나에게 훈계하고 비난했다. | 8명(5%) |
| 귀찮아하고 별 일 아니라는 듯 불평했다. | 39명(24.5%) |
| 가해자를 두둔했다. | 6명(3.8%) |
| 나보다는 가해자와 대화했다. | 21명(13.2%) |
| 나의 요구를 무시 | 12명(7.5%) |
| 기타 | 18명(11.3%) |

3)경찰 신고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찰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240명중 신고 경험은 159명(66.25%)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신고경험이 없는 81명(33.75%)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신고했다고 나중에 보복 당할까봐 의 응답이 66.7%로 가장 많은 이유를 들었고 그다음에는 가족인데 신고하기가 꺼려져서라는 응답도 45.7%로 차지했다.

<경찰 신고 유무>

| | |
|-----------|--------------|
| 신고 경험이 있음 | 159명(66.25%) |
| 신고 경험이 없음 | 81명(33.75%) |
| 합계 | 240명(100%) |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중복 응답, 경험 없음 응답 81명 대비율 조사)

| | |
|----------------------|------------|
|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 6명(7.4%) |
| 가족인데 신고하기가 꺼려져서 | 37명(45.7%) |
|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 20명(24.7%) |
| 신고했다고 나중에 보복 당할까봐 | 54명(66.7%) |
|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 6명(7.4%) |
| 기타 | 17명(7.1%) |
| 중복 응답 합계 | 140 |

이를 살펴보면, 경찰신고에 대해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신고의 상당부분은 폭력의 종식을 위해 이러한 두려움과 망설임 끝에 내린 것이라는 판단된다.

경찰을 대상으로 평소 가정폭력 사건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범죄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52.5%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그렇지만, 심각할 때만 신고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8.4%, 가정 내 일이니까 가정 내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10.7% 있었다.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이러한 인식은 자칫,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별일도 아닌데 신고했다는 식으로 귀찮아하거나 알아서 처리하는 식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가정폭력 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 인식 조사>

| | |
|-------------------------------|-------------|
| 가정 내 일이니까 가정 내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 60명(10.7%) |
| 사건이 심각할 때만 신고 했으면 좋겠다. | 160명(28.4%) |
| 어떤 경우에도 범죄이므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 295명(52.5%) |
| 기타 | 33명(5.9%) |
| 무응답 | 14명(2.5%) |
| 합계 | 562명(100%) |

사건이 심각한 때만 신고하거나, 가정 내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경찰의 인식과는 달리, 피해자 대상 조사에서 나타난 경찰 신고 당시 폭력빈도는 이미 절반 이상이(57.9%) 월1회 이상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고당시, 폭력의 빈도 정도>

| | |
|--------------|-----------|
| 첫 번째 폭력 | 9(5.7%) |
| 두 번째 폭력 | 15(9.4%) |
| 3회-5회째 | 25(15.7%) |
| 평소 월 1-2회 이상 | 48(30.2%) |
| 평소 주1회 이상 | 44(27.7%) |
| 평소 연 1-2회 이상 | 18(11.3%) |
| 합계 | 159(100%) |

때문에, 평소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눈에 보이는 폭력상황의 경중을 떠나,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범죄수사와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4.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권리를 위한 효과적인 경찰 개입 방향

1)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 변화

가정폭력은 결코 사소한 집안 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살해당한 여성의 46%는 친밀한 이성파트너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 가운데 73%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행이 유지되었다는 통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의 다른 폭력과 연결하여 또 다른 폭력을 증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많은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직접적으로 돕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의 편견과 실수로 피해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경찰의 인식변화를 도울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가정폭력에 관련한 교육과 사건처리 안내서 활용이라 생각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무지에 가정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 비치유무에 대해 89.1%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근무지에 관련 안내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관련 교육이나 회의에 대해서도 68.5%이상이 일상적인 직무회의와 전문교육을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관련 안내서가 어떻게 잘 활용되고, 해당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다면 경찰의 인식도모와 더불어 피해자 안전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고소하시겠습니까?

2)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현재 지자체 차원의 여성폭력방지협의체가 존재하고 광역시 중심에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안전 확보라는 목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역의 관련기관 연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85%가 연계망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미 활용한 바 있다는 대답을 했다. 연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관련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정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 더욱 섬세해야 할 연계망, 사례로 본 경찰의 섬세한 접근(상담소, 범죄심리요원, 여성청소년계장, 피해자). 지역케어시스템.

3)경찰의 임시조치권과 피해자호보명령제도 구축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524명의 경찰 중 233명(44.5%)이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현장 경찰의 입장에서 본 가정폭력 근절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법적 처벌강화와 격리제도 도입에 관한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임시조치권에 한계가 있고 사법기관의 오랜 판결기간 동안 보복성 폭력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위반 시 별도의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상습적이고 고위험적인 가해자가 그대로 방치되고 격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임시조치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위험성 평가지표 활용 등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

1. 경찰이 취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전체적인 경향 - 이호중
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현황 (1998-2006)’을 보면 임시조치의 활용이 저조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응급조치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조치가 200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 가부장제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경찰단계에서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경찰의 신청-검사의 청구-법원의 결정”이라는 번거로움도 임시조치의 활용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담당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을 거치는 데 7-10일 소요).

2.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취지

1)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와는 무관하게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피해자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것은 피해자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현행 처벌법 상 피해자보호조치로는 주거퇴거명령과 접근금지, 친권제한조치가 전부이다. 그나마도 실제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의 금지”,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3) 임시조치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순간 끝나버리게 되는데 법원이 보호처분을 가해자에 대한 교정위주의 처분으로 하게 되면 보호처분 이후의 피해자보호에 흠결이 남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독자성은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5. 마치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현재 법체계에서의 경찰권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

당연히, 피해자 안전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2007년 홍미영 의원과 함께 개정안에 경찰의 임시조치권 강화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 개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과 제도 개선노력과 더불어 현재의 상황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실천할 때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에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별첨]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 관련 설문지 및 통계결과

■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의 초기개입 관련
설문지 및 조사 결과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설문지 및 조사 결과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 ② 전치 1-2주 이상 / 타박상 및 멍이 들었음
- ③ 폭력위협으로 심리적 두려움/불안감/ 분노 등
- ④ 옷이나 머리가 흐트러짐
- ⑤ 기타 폭력상황에 대해 추가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3. 경찰 신고에 대한 인식 조사

1)신고 유무: ① 신고 경험이 있음 ② 신고 경험이 없음

2)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 ② 가족인데 신고하기가 꺼려져서
- ③ 신고해도 별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 ④ 신고했다고 나중에 보복 당할까봐
- 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 ⑥ 기타 ()

<아래 항목들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경찰의 조치에 대한 현황 조사

1)누가 신고 했는지요?

- ①본인 ② 가족 ③ 이웃 ④ 1366 등 상담기관 ⑤기타

2)신고당시, 폭력의 빈도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 ①처음 ②두번째 ③3-5번째 ④평소 월 1-2회 ⑤평소 년 1-2회정도
- ⑥평소 주1회 이상

3)몇 번째 신고 였습니까?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 ⑦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줌 ()
- ⑧ 임시조치, 가정폭력특례법, 기타 필요한 정보를 설명했음
- ⑨ 그 외 다른 조치를 받았다면 추가 설명해주시시오

9)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경찰의 태도는 어떠했는지요

(해당사항 모두 체크)

- ① 매우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 ()
- ② 비교적 적절하게 조치해 주었다. ()
- ③ 나에게 훈계하고 비난했다. ()
- ④ 귀찮아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불평했다. ()
- ⑤ 가해자를 두둔했다. ()
- ⑥ 나보다는 가해자와 대화했다. ()
- ⑦ 나의 요구를 무시
(요구사항-체크: 가해자 격리 / 고소 / 상담 및 보호기관 요청)
- ⑧기타 ()

10)경찰 신고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셨으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만족 (이유:
- ② 보통 (이유:
- ③ 불만족 (이유:

11)경찰 신고 후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효과가 있었다.
- ② 별로 변화가 없었다.
- ③ 상황이 더 나빠졌다 (신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분노하거나 폭력했음)

■ 가정폭력사건 피해현황과 경찰의 초기개입 관련 설문결과
(14개 지역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조사 240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피해현황과 경찰의 초기개입 관련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의 목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사법개입의 최일선인 경찰의 초기개입에 대한 피해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과 안전확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설문은 상담소에서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전화상담, 면접상담시 관련 의뢰자와 연계하고 있는 쉼터 입소자들, 기타 신고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다.

○ 조사기간: 2008년 5월-9월

○ 설문수거 총계: 240개

○ 설문지역: 14개 지역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서울 중구, 서울 강서구, 광주, 부산, 대구, 전주, 천안, 광명, 진해, 영광, 안양, 수원, 성남, 강릉, 김포)

○ 설문대상: 전화상담 의뢰자, 면접상담 의뢰자, 쉼터 입소자, 기타 신고자

○ 설문모니터링방법: 전화 및 면접상담시 설문, 컴퓨터 입소자 대상 설문, 기타 신고자 설문

| 설문방법 | 명(%) |
|-----------|----------|
| 전화상담 의뢰자 | 58(24.1) |
| 면접상담 의뢰자 | 82(34.2) |
| 컴퓨터입소자 대상 | 63(26.3) |
| 기타 신고자 | 37(15.4) |
| 합계 | 240(100) |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현황]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중 30대와 40대가 각각 32.5%, 39.2%로 전체 통계에서 약 71.7%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의뢰와 컴퓨터 이용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까지 가장 많이 분포됨을 알 수 있다. 50대 이상의 고령 피해자 역시 21.7%로 나타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혼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며(71.3%), 결혼기간은 5년이하에서 30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 다만, 결혼 10년에서 19년까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으로(31.9%) 나타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상담을 의뢰하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나이

| 나이 구분 | 명(%) |
|---------|----------|
| 10세-19세 | 2(0.8) |
| 20세-29세 | 14(5.8) |
| 30세-39세 | 78(32.5) |
| 40세-49세 | 94(39.2) |
| 50세-59세 | 43(18) |
| 60세-69세 | 7(2.9) |
| 70세-79세 | 2(0.8) |
| 합 계 | 240(100) |

2) 결혼상태

| 결혼상태 | 명(%) |
|-------------|-----------|
| 기 혼 | 171(71.3) |
| 재 혼 | 19(7.9) |
| 동 거 | 8(3.3) |
| 미 혼 | 18(7.5) |
| 기 타(무응답 포함) | 24(10) |
| 합계 | 240 |

3) 결혼기간

| 결혼기간 | 명(%) |
|------------|----------|
| 5년 이하 | 31(12.9) |
| 5년 -9년 | 26(10.8) |
| 10년-14년 | 44(18.3) |
| 15년-19년 | 35(14.6) |
| 20년-24년 | 30(12.5) |
| 25년-29년 | 15(6.3) |
| 30년 이상 | 13(5.4) |
| 기타(무응답 포함) | 46(19.2) |
| 합계 | 240(100) |

[가정폭력 피해 현황]

1) 상대 가해자 현황

가정폭력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 가해자는 현재의 배우자가 8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과거 배우자 역시 5.8%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후에서 20명중 1명 이상은 과거 배우자에게 폭력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상대 가해자 현황 | 명(%) |
|------------|-----------|
| 현재 배우자 | 201(83.8) |
| 과거 배우자 | 14(5.8) |
| 직계 가족 | 7(2.9) |
| 직계 비속 | 3(1.3) |
| 기타(무응답 포함) | 15(6.2) |
| 합계 | 240(100) |

2)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의 형태는 언어적 폭력과 위협에서부터 물리적 폭력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이중 ‘손이나 발로 마구 구타하거나 몸과 목을 강하게 누르는’ 폭력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76.3%)을 차지하였다.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 대부분 언어적 폭력도 함께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240명의 응답자중 대부분 3개 이상의 아래의 폭력 유형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 흉기나 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고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가정폭력 유형(중복응답) | 240명(대비율) |
|--|------------|
| 흉기나 무기(가구집기, 혁대 등)로 위협하거나 사용함 | 115(47.9%) |
| 손이나 발로 마구 구타하거나 목과 몸을 강하게 누름 | 183(76.3%) |
| 폭력 후 성적 모욕을 주거나 강제적 성관계로 통제하거나 학대함 | 77(32%) |
| 몸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림 (유리창 등 파손포함) | 143(59.6%) |
|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본인, 자녀, 친정식구들 헐박함 | 155(64.6%) |
| 기타 | 48(20%) |
| 중복 응답 합계 | 721명 |

2-1) 위 2번 응답 중 기타 폭력상황에 대한 현황

| 기타 폭력상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하자고 강요 •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화 협박과 미행을 계속함 • 성적인 폭언과 의심 • 강제로 약을 먹임 • 욕조와 벽에 머리 박음 • 방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음 • 외도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스토킹, 도청 • 이혼 후에도 집 주변을 배회, 공포분위기 조성 • 본인 모르게 카드 발급하고 대출받음 • 가구모서리에 던져서 출혈이 심함 • 얼굴과 머리 위에 침을 뱉음 • 아이들에게 폭력 • 베트남으로 보내버린다고 협박(이주여성 피해자) • 전화와 외출을 통제함 • 손가락으로 머리, 얼굴, 목, 가슴 등을 찌르며 폭언을 함 |

• 못으로 어깨 상처내고, 새끼손가락은 인대 골절로 기형. 옷도 수없이 찢음, 방에 감금하고 밖에서 문에 못을 박음

3) 폭력 빈도 정도

가정폭력피해의 빈도는 월 1-2회가 30.8%로 전체 빈도현황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주 1회 이상의 일상적 폭력빈도는 23.8%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53.8%)이 월 1회 이상의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폭력 빈도 정도 | 응답 명수(%) |
|------------|----------|
| 첫 번째 | 7(2.9) |
| 두 번째 | 14(5.8) |
| 세번째에서 다섯번째 | 31(12.9) |
| 평소 월 1-2회 | 74(30.8) |
| 평소 연 1-2회 | 29(12.1) |
| 평소 주1회 이상 | 57(23.8) |
| 기타 | 28(11.7) |
| 합계 | 240(100) |

4)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상황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상황은 화상 골절 장기 손상 등이 12.9%, 타박상이 72%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85.4%)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증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 피해 상황(중복 응답) | 240명(대비율) |
|--------------------------|------------|
| 화상/골절/뇌출혈/자상/장기기관 손상 | 43(12.9%) |
| 전치 1-2주 이상/타박상 및 멍들었음 | 173(72%) |
| 폭력위협으로 심리적 두려움/불안감/ 분노 등 | 205(85.4%) |
| 옷이나 머리가 흐트러짐 | 138(57.5%) |
| 기타 | 47(19.6%) |
| 합계 | 606 |

4-1) 위 4번 응답 중 기타 피해 상황에 대한 현황

| 기타 피해상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숨의 위협을 느껴 2층에서 뛰어내림 • 대안관계가 단절됨 •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서 경제적 손실을 받음 • 머리를 잡아당겨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짐 • 가족 옷, 이불, 방석 등을 가위로 찢어버림 • 거울과 시계 등 집기들 파손 • 우울증으로 병원치료 • 알몸으로 쫓겨남 • 우울증으로 인하여 당시 수면제 복용 후 자살을 시도 • 하혈 • 아이들까지 같이 죽자고 하며 불을 지르려고 함 • 고막 파손으로, 인공 고막 시술 • 치아가 부러짐 • 집에서 쫓겨남 |

[경찰 신고와 신고 회피에 대한 피해자 인식]

가정폭력 피해여성 절반 이상(66.25%)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경험이 없는 경우도 33.75%로 조사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성을 이유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꺼려져서라는 대답이 45.7%, 신고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가 24.7% 나타났다.

이는 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성 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1) 신고 유무

| | |
|-----------|--------------|
| 신고 경험이 있음 | 159명(66.25%) |
| 신고 경험이 없음 | 81명(33.75%) |
| 합계 | 240명(100%) |

2)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중복 응답, 경험 없음 응답 81명 대비율 조사)

| | |
|----------------------|------------|
|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 6명(7.4%) |
| 가족인데 신고하기가 꺼려져서 | 37명(45.7%) |
|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 20명(24.7%) |
| 신고했다고 나중에 보복 당할까봐 | 54명(66.7%) |
|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 6명(7.4%) |
| 기타 | 17명(7.1%) |
| 중복 응답 합계 | 140 |

[경찰 신고에 대한 현황]

○ 신고자와 신고당시 폭력빈도 정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주로 본인이었으며, 자녀 및 가족, 이웃, 관련 상담기관에서도 경찰에 신고하여 연계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신고 당시 폭력의 빈도는 평소 주1회 이상, 월 1-2회 이상이 각각 27.7%와 30.2%로 집계되었는데, 경찰 신고 당시 이미 절반 이상(57.9%)이 월 1회 이상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신고자 (중복 응답)

| 본인 | 가족 | 이웃 | 1366등 상담기관 | 기타 |
|------|-----|-----|---------------|----|
| 120명 | 38명 | 23명 | 5명 | 9명 |

2) 신고당시, 폭력의 빈도 정도

| | |
|--------------|------------------|
| 첫 번째 폭력 | 9(5.7%) |
| 두 번째 폭력 | 15(9.4%) |
| 3회-5회째 | 25(15.7%) |
| 평소 월 1-2회 이상 | 48(30.2%) |
| 평소 연 1-2회 이상 | 18(11.3%) |
| 평소 주1회 이상 | 44(27.7%) |
| 합계 | 159(100%) |

○ 신고 횟수와 신고기관

신고 횟수는 절반 이상(50.3%)이 첫 번째 신고였으며, 두 번째 신고는 28.9%, 3회 이상 신고는 20.8%로 나타났다.

신고 기관은 112신고가 5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구대와 경찰서도 각각 24.7%, 17.4%로 나타났으며 20명 중 1명은 119신고

(5.1%)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고 횟수

| | |
|-------|------------|
| 처음 | 80명(50.3%) |
| 두 번째 | 46명(28.9%) |
| 3-5회 | 25명(15.7%) |
| 6회 이상 | 8명(5.1%) |
| 합계 | 159(100%) |

4) 신고 기관(신고횟수에 따른 중복응답)

| | | | | |
|------------|------------|------------|----------|----------|
| 112 | 지구대 | 경찰서 | 119 | 기타 |
| 92명(51.7%) | 44명(24.7%) | 31명(17.4%) | 9명(5.1%) | 2명(1.1%) |

○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각과 반복 신고 경험

경찰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10분 이내 도착이 34.8%, 10분 이후 30분 이내 42.4%, 30분 이상 1시간 이내가 8.2%로 조사되었다. 이는 피해자 절반 이상(50.6%)이 경찰 신고 후 10분 이상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32%가 반복 신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 신고 후, 경찰이 도착 시각 (중복응답)

| | | | |
|------------|------------|-----------|------------|
| 10분 이내 도착 | 10분-30분 | 30분 -1시간 | 기타 |
| 55명(34.8%) | 67명(42.4%) | 13명(8.2%) | 23명(14.6%) |

6)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반복 신고 경험 횟수

| 재차 신고 안함 | 1회 | 2회 | 3-5회 | 6회 이상 |
|------------|------------|------------|----------|-------|
| 91명(67.9%) | 22명(16.4%) | 14명(10.4%) | 7명(5.2%) | 0명 |

○ 경찰 도착했을 때의 현장 상황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23.3%, 가해자가 현장에서 떠난 상태가 15.1%, 가해자가 문을 잠갔거나 경찰조치를 거부하는 상태가 10.1%, 내가 피해있었던 상태가 10.7%, 폭력상황이 종료된 상태가 38.4%로 나타났다.

7)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

(중복응답/ 신고자 159명 대비율 조사)

| | |
|-----------------------------|------------|
| 폭력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 37명(23.3%) |
|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현장에서 떠난 상태 | 24명(15.1%) |
| 가해자가 문을 잠갔거나 경찰 조치를 거부하는 상태 | 16명(10.1%) |
| 내가 피해있었던 상태 | 17명(10.7%) |
| 폭력상황이 종료된 상태 | 61명(38.4%) |
| 기타 | 15명(9.4%) |

8) 경찰의 조치 현황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취한 조치는 폭력행위에 대한 제지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정보 안내가 31.4%, 가해자에게 주의조치가 30.8%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는 24.5%, 가정폭력 방지법 설명이 20.1%, 피해자를 관련 기관에 인도하고 동행하는 임시조치가 18.9%, 현장조사가 12.6%, 현행법 연행이 8.8%로 조사되었다.

경찰의 조치 현황은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다만, 기타 응답의 일부 부정적 답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사’이라는 언급을 하며 범죄인식을 보이지 않거나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경우 그냥 돌아가는 소극적인 대처, 가해자인 남편하고만 대화를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찰의 조치 사항 (중복응답) | 159명 (대비율) |
|--------------------------------|---------------|
| 폭력행위 제지 | 59(37.1%) |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 | 39(24.5%) |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 안내 및 설명 | 50(31.4%) |
| 피해자를 관련 기관에 인도하고 동행 | 30(18.9%) |
| 현행범 연행 | 14(8.8%) |
|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사진찍기 등) | 20(12.6%) |
|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줌 | 49(30.8%) |
| 임시조치, 가정폭력특례법, 기타 필요한 정보를 설명했음 | 32(20.1%) |
| 기타 | 42(26.4%) |

8-1) 위 8번 응답에 대한 기타 조치 사항

| 경찰의 기타 조치사항 | |
|-------------|--|
| 긍정적 답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러 갈 때 동행 • 피해자의 집을 찾길 수 있도록 도와줌 • 100m 접근금지 신청가능함에 대해 설명해줌 • 남편에게 주의를 주고 피해자를 안정시킨 뒤 법에 대해 설명 • 신고 후, 경찰이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와 남편과 경찰서에 간 후, 조사한 후 경찰이 1366으로 데려 다 줌 • 옷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함께 동행 • 조사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줌 |

| | |
|-----------------------|---|
| 부 정 적 답 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냥 보고 아무 일도 없다고 감 • 남편이 가정사라며 경찰에게 말을 해서 그대로 돌아감 • 부부싸움이라고 남편보고 참으라 하였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함 • 피해자가 피할 곳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안내해주지 않았음(짚질방이나 가라고 했음) • 남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대화하고 피해자를 고소할 것인지 질문 •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함 • 가정사이니 서로 좋게 해결하고, 다음에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고 진단서내고 이혼하라고 함 • 신고를 다시 하라고 미룸 • 가정 일이라며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함 • 맞지도 않았는데 왜 신고했냐고 함 • 남편을 분리시키고 피해자도 잘못했다고 말함 • 남편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정도로 가볍게 처리 • 남편이 문을 안 열어 주어 그냥 돌아감 • 부부싸움이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함 • 남편과 이야기 나누고 그냥 감 • 없던 걸로 하였음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오기 전에 남편이 도망가서 출동이 취소 • 파출소에 부부를 데리고 가서 경찰에 고소하라고 함 • 조서를 꾸민 후 돌아감 • 파출소로 동행하여 조서를 작성함 •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함 • 고소할 것인지 물어봄 •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혼하라고 함 |

9) 피해자 입장에서의 경찰의 태도 현황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경찰의 태도는 비교적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4%). 그 다음으로 귀찮아하고 별 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이 24.5%,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응답이 18.9%로 나타났다.

| 경찰의 태도 현황(중복 응답) | 159명 대비율 |
|------------------------|------------|
| 매우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 | 30명(18.9%) |
| 비교적 적절하게 조치해 주었다. | 70명(44%) |
| 나에게 훈계하고 비난했다. | 8명(5%) |
| 귀찮아하고 별 일 아니라는 듯 불평했다. | 39명(24.5%) |
| 가해자를 두둔했다. | 6명(3.8%) |
| 나보다는 가해자와 대화했다. | 21명(13.2%) |
| 나의 요구를 무시 | 12명(7.5%) |
| 기타 | 18명(11.3%) |

10) 경찰 신고에 만족도와 그에 대한 이유

경찰 신고에 대한 피해자 만족도는 20.1%가 만족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42.8%가 불만족했다는 응답을 보여, 불만족 했다는 응답이 만족했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었고 친절했으며, 정보제공이나 병원, 쉼터 연계 등 임시조치를 해주었다는 이유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그 외에 폭력이 제지 되었고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는 대답도 있었다.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불친절하고 가해자를 두둔했다,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사소한 일로 취급되어졌거

나 피해자에게 훈계,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을 쌍방과실화 시킨 것, 경찰 도착이 늦었거나 오지 않는 경우도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 조사되었다.

| | |
|-----|------------|
| 만족 | 32명(20.1%) |
| 보통 | 59명(37.1%) |
| 불만족 | 68명(42.8%) |
| 합계 | 159(100%) |

10-1) 경찰신고에 대해 만족했던 이유

- 내 입장을 잘 들어주고 그 후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 위협이나 협박 시 몹시 불안했는데 그로부터 피해서 심터에 연계해주셨다.
- 가해자에게 항의하였고, 나의 편을 들어주었다.
- 폭력 중단시키고 시설에 입소시켜 주었다.
-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 무료 상담기과 안내, 검찰 조사 받기 전 미리 만나서 사정 설명하라고 안내해 주었다.
-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가해자를 상담소로 인계하여 상담토록 하고 겁을 내는 자녀를 위로해주었다.
- 친절하고 호의적이었다.
-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라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빨리 현장으로 출동하여 고맙고 감사했다.
- 폭력행위 제지하였고 관련 기관에 연계해 주었다.
- 마음에 안정을 주었다.
- 폭력이 멈추었다.

10-2) 경찰 신고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느낀 이유

- 현장 도착이 늦음
-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버려서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
- 남편에게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
- 잘 살라고 위로만 함
- 빨리 도착해 주었으나 맞을 짓을 했다는 듯 한 말투
- 친절 했지만, 왠지 나에게 잘못된 이유가 있을거라는 듯한 느낌을 줌
- 경찰이 남편에게 훈계함
- 예방에 대한 경찰 도움이 불가능, 피해가 발생한 후 신고 전에 다른 조치가 전혀없다. 예를 들면 때리기 전에는 신고를 해도 도움받기가 어렵다.
- 병원에 동행 해줌, 남편을 파출소로 데려감
- 별 일 아닌 듯 생각하는 것 같았다.
- 남편에게 경고는 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 별다른 게 없었다.
-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가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분리해주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내가 그 때 코피가 많이 났는데, 증거도 안 해주고 그냥 본인보고 병원가라고 함
- 보호처분으로 교육 명령을 받게 되었다.
- 예상대로는 아니지만, 인정은 해주었다.

10-3) 경찰신고에 대해 불만족했던 이유

- 가해자를 두둔하고 나를 훈계하고 비난했으며, 별 일 아니라는 듯 불평하였다.
- 나의 두려움에 적극적인 관심이나 대책이 없었다.
- 불친절했다.
-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지 않음

- 부부싸움이라고 그냥 갔다.
- 빨리 도착하지 않아서 그 안에 죽을 것만 같았다.
- 경찰의 태도에서 사소한 일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
- 다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그냥 가버렸다.
- 가정 싸움이라 터치할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일축
- 사건이 종료된 후라 별도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 때린 후 신고해서 도움 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 좋아서 동거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싫다고 하나며 날 훈계했다.
- 경찰이 남편하고 친분이 있어서 효과적인 조치가 없었다.
- 생명에 위협을 느꼈는데도 그냥 지나갔다.(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 가정사라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남편에게 아무런 주의를 주지않고 말없이 감
- 귀찮아함
- 신고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났는데도 출동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분노했었음
-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고 돌아간 점
- 여성 상담하는 곳이나 피신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런 곳에 갈 수 없다고 했음
- 나는 방어 행동으로 칼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되었다.
- 그냥 별 일 아닌 양 말하고, 이런 곳이(쉼터)가 있다고 말해주지도 않았다. 모자센터가 있기는 한데 단 하루 밖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하며 돌아갔다.
- 특별한 조치없이 돌아감
- 피해 사실이 명확한데 가해자의 의견을 존중한 것 (거짓 증언인데)
- 6학년인 우리 딸아이가 신고하였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집 밖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아 불쾌했고 믿지 않겠다.
- 남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즐겼다.
-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 다쳐서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 적극적인 폭력제지 및 분리를 하지 않았다.

- 신고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 지구대에서 오셨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나중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응급치료 후 친정집으로 귀가시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때 처벌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여 어려움이 많았음
- 신고했는데도 오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남녀애정문제로 치부
-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다.
- 폭력에 대한 나의 방어적 행동을 쌍방과실로 몰아감

11) 경찰 신고 후 효과 유무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로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18.2%,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6%, 신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분노하거나 폭력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은 25.8%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10명중 8명은(81.8%) 별로 변화를 못 느꼈거나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다고 대답했으며 2명 이하(19.2%)만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 |
|---|------------|
| 효과가 있었다. | 29명(18.2%) |
| 별로 변화가 없었다. | 89명(56%) |
| 상황이 더 나빠졌다. (신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분노하거나 폭력했음) | 41명(25.8%) |
| 합 계 | 159명(100%) |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조사기간: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애쓰시는 경찰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인권운동단체로써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다양한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1983년 창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문의 목적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대응의 형사사법 체계 최일선 기관인 경찰의 초기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앞으로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전체 취합되어 통계자료화 되므로 개인별, 지역별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드림

<인적사항>

1. 성별 ① 남성 () ② 여성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기타 ()

3. 귀하의 근무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① 2년 이내 ② 2년 이상 5년 이하 ③ 5년 이상 10년 이내
 ④ 10년 이상 ⑤ 20년 이상

4. 귀하의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

5. 귀하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① 경찰청 ② 경찰서 ③ 지구대 ④ 기타 ()

<가정폭력 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내부 환경>

6. 귀하의 근무지에 가정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또는 매뉴얼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 (부가 설명:)

- 6-1. 귀하는(6번, 있음에 응답했을 경우) 안내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근무가 바빠서 잘 보지 못한다.
 ②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경우, 참고한다.
 ③ 평소에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

7. 귀하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교육이나 회의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기)

- ① 주 1회 이상 교육 및 관련 직무 회의를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 ② 년 2회 이상 관련 전문 교육(세미나 등)을 받고 있다.
- ③ 년 1회 정도 전문 교육(세미나 등)을 한다.
- ④ 기타 (부가 설명:

8. 귀하께서 접하는 가정폭력 관련 교육(세미나, 회의 등)방법이 귀하에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가정폭력과 관련법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② 실제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 ④ 기타 (부가 설명:

9. 귀하는 평소 가정폭력 사건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 내 일이니까 가정내 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 ② 사건이 심각할 때만 신고 했으면 좋겠다.
- ③ 어떤 경우에도 범죄이므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 ④ 기타 (

<이하 문항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을 했을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10. 귀하께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상담소나 기관의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 ① 활용이 가능함 ② 이미 활용한 경험이 있음 ③ 잘 모르겠음

- ② 폭력상황은 분명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았음 ()
- ③ 피해자가 다쳤으나, 본인이 알아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았음
- ④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당사자들이 잘 해결 할 거라 생각했음
- ⑤ 지역내에서 안면이 있는 집안이어서 관여하기가 어려웠음 ()
- ⑥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웠음 ()
- ⑦ 기타 (부가설명:

14. 귀하께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처하실 때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두가지만 체크)

- ① 피해자의 피해정도 ()
- ②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 ()
- ③ 피해자의 요구사항 ()
- ④ 가해자의 폭력행위 빈도(초범인지 상습범인지) ()
- ⑤ 기타 ()

15. 가장 인상 깊었던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 사례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16. 귀하의 입장에서 가정폭력 근절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결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조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은의 목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사법체계 최일선 기관인 경찰의 초기대응현황과 인식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함이다.

설문은 14개 지역 여성의전화와 부설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했으며, 방문 및, 우편, 간담회와 교육시 경찰 당사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기간: 2008년 5월-9월

○ 설문수거 총계: 562개

○ 설문지역: 14개 지역 (광주, 부산, 대구, 광명, 진해, 영광, 군산, 천안, 익산, 안양, 수원, 성남, 강릉, 김포)

○ 설문대상: 경찰

○ 설문모니터링방법: 직접기입작성(방문, 우편, 간담회와 교육시 설문조사)

[설문 응답 경찰의 인적사항]

설문 응답자 562명의 기본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남성이 89.7%, 여성이 10.3%로 구성되었고,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모두 418명으로(74.4%)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경찰근무경력은 10년 이상 경력이 39.1%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경력이 23.3%,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이 16.4%로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직책은 경사, 경장, 순찰요원이 각각 126명, 77명,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지는 지구대가 74.6%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찰서 근무는 22.6%로 조사되었다.

1. 성별 현황

| 남성 | 여성 | 합계 |
|------------|-----------|-----------|
| 504(89.7%) | 58(10.3%) | 562(100%) |

2. 연령 현황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무응답 | 합계 |
|-----|------|------|-----|-----|-----|-----|-----|
| 55명 | 219명 | 199명 | 76명 | 0명 | 0명 | 13 | 562 |

3. 근무경력 현황

| | |
|--------------|------------|
| 2년 이내 | 46(8.2%) |
| 2년 이상 5년 이내 | 63(11.2%) |
| 5년 이상 10년 이내 | 92(16.4%) |
| 10년 이상 | 220(39.1%) |
| 20년 이상 | 131(23.3%) |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 | |
|-----|-----------|
| 무응답 | 10(1.8%) |
| 합계 | 562(100%) |

4. 직책 현황

| | | | | | | | | | |
|------|---------|-------|----------|------|-------|------|-----|-----|-----------|
| 관리 | 의경 | 경위 | AI | 경사 | 순경 | 경장 | 팀장 | 팀원 | 순찰요원/순찰팀원 |
| 7명 | 4명 | 23명 | 3명 | 126명 | 46명 | 77명 | 14명 | 7명 | 64명 |
| 순찰팀장 | 민원담당형사관 | 외근형사 | 지구대순찰근무자 | 부소장 | SP | 일반직 | 부팀장 | 조사관 | 계장 |
| 7명 | 1명 | 1명 | 1명 | 1명 | 3명 | 4명 | 2명 | 3명 | 8명 |
| 계원 | 관리반장 | 지구대팀장 | 직원 | 정보관 | 경찰공무원 | 파출소장 | 기능직 | 실무관 | |
| 3명 | 1명 | 2명 | 4명 | 2명 | 3명 | 1명 | 1명 | 1명 | |

5. 근무지 현황

| | | | |
|-------------|-------------|-----------|------------|
| 경찰서 | 지구대 | 기타 | 합계 |
| 127명(22.6%) | 419명(74.6%) | 16명(2.8%) | 562명(100%) |

[가정폭력 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내부 환경 조사]

가정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근무지 내부 환경 조사로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는지에 물음에 비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89.1%로 대부분 근무지에 안내서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의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 참고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평소에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8.3%, 근무가 바빠서 잘 보지 못한다는 응답은 11.2%로 조사되었다. 현장 경찰의 76.5%는 이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거나 사건 처리시 참고하는 용도로 안내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6. 근무지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또는 매뉴얼 등)이 비치유무

| 있음 | 없음 | 기타 | 합계 |
|-------------|-----------|-----------|------------|
| 501명(89.1%) | 51명(9.1%) | 10명(1.8%) | 562명(100%) |

6-1. 가정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 활용현황

| | |
|----------------------|-------------|
| 근무가 바빠서 잘 보지 못한다. | 63명(11.2%) |
|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경우, 참고한다. | 327명(58.2%) |
| 평소에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 | 103명(18.3%) |
| 무응답 | 69명(12.3%) |
| 합계 | 562명(100%) |

7.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교육이나 회의 현황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교육이나 회의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1회 이상 직무회의를 한다는 응답이 24.2%, 연 2회 이상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21.9%, 연 1회 전문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22.4%로 나타나 전체

68.5%이상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주 1회 이상 교육 및 관련 직무 회의를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 136 (24.2%) |
| 연 2회 이상 관련 전문 교육(세미나 등)을 받고 있다. | 123 (21.9%) |
| 연 1회 정도 전문 교육(세미나 등)을 한다. | 126 (22.4%) |
| 기타 | 157 (27.9%) |
| 무응답 | 20 (3.6%) |
| 합계 | 562(100%) |

7-1) 위 7번 응답 중 기타 표기란 서술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처리 시 업무매뉴얼을 참고 • 인터넷을 통해 열람 • 신고를 받고 나가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직원 상호 간 의논함 • 매뉴얼과 교육 • 지역경찰관 교육 시 교양 받음 • 구체적이고 명확한 매뉴얼 정비 교육 전환 필요 • 경찰서에 계획이 있을 경우 교육 실시 •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음 (2명) • 파출소 자체 교육 • 담당부서에서 매뉴얼 하단되어 참고자료 및 공문으로 대체 • 사건 처리 시 동료나 상사와 의견 교류 및 교육 • 기회가 닿으면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음 • 경찰 자체 교육이나 회의 상 교양은 없으며, 가정폭력 매뉴얼 숙지 또는 교양정도 • 교육 받게 되면 활용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 |
|--|

- 사건을 접할 때 마다
- 경찰서에서 월 1회 교양(2명)
- 수시로 직무교육으로 받고 있음 (6명)
- 이제 막 지구대에 근무 배치되어 알 수 없음 (3명)
- 없다. (8명)

8. 가정폭력 관련 교육(세미나, 회의 등) 효과 현황

가정폭력 관련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법을 이해하고 현장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에 각각 35.9%, 31.5%로 대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67.4%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서술내용에는 매뉴얼과 현장 사례간의 차이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 | |
|--------------------------------|-----------------|
| 가정폭력과 관련법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185명 (35.9%) |
| 실제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162명 (31.5%) |
|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 139명 (27%) |
| 기타 | 29명 (5.6%) |
| 응답자 합계 | 515명 (100%) |

8-1) 8번 문항의 기타에 대한 서술내용

- 실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시는 가정 폭력 사건 매뉴얼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매뉴얼은 업무처리에 도움됨
-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 대처하는 시스템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좋은 제도는 반드시 좋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 상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마다 초기 대응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 매뉴얼이나 참고교육과는 상반된 현장 상황이 많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9. 평소 가정폭력 사건 신고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사건 신고에 대한 현장 경찰의 인식은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52.5%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건의 경중을 떠나, 범죄신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사건이 심각할 때만 신고 했으면 하는 응답이 28.4%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10.7%로 조사되었다.

| | |
|-------------------------------|-------------|
| 가정 내 일이니까 가정 내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 60명(10.7%) |
| 사건이 심각할 때만 신고 했으면 좋겠다. | 160명(28.4%) |
| 어떤 경우에도 범죄이므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 295명(52.5%) |
| 기타 | 33명(5.9%) |
| 무응답 | 14명(2.5%) |
| 합계 | 562명(100%) |

9-1) 9번 문항중 기타에 대한 서술 내용

- 경찰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되, 법적인 제재 영역 내에서는 경찰관 개입이 필요

- 경찰이 무조건 관여한 법적 처리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피해여성이 사건 처리 후 경찰관에게 오히려 가해 남성을 과하게 처벌 또는 제지(벌금)하였다고 싫어함
- 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이 가정폭력 신고사건입니다.
- 경찰관이 개입을 하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
- 모든 걸 경찰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1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추후 형사적 문제 필요시 신고를 하였으면 좋겠다.
- 무조건 신고하는 것보다는 가정 폭력의 발생 원인부터 찾아서 가정폭력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
- 1번과 2번을 참작하여 처리
-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 노력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 원만한 대화 시도 후 불가능 할 때
- 가정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이 중할 시 사법처리
-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으로 사건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발생 때부터 경찰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직원 중에 가정 문제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즉각 상담이 효율적으로 판단(‘법’은 개입 자제 요망)
- 일반범죄보다 엄격하면서도 가정의 순회교육 필요
- 효과적인 대처수단 필요
-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 1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폭행 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경찰권 발동 필요요함
- 경우에 따라 신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 현황/ 처리경험자 524명 응답]

10.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상담소나 기관의 연락처를 활용 유무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역의 관련기관 연계에 대해 이미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4%,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51%로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 중 85%가 지역의 관련 기관연계망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 | |
|---------------|------------|
| 활용이 가능함 | 267명(51%) |
| 이미 활용한 경험이 있음 | 178명(34%) |
| 잘 모르겠음 | 79명(15%) |
| 합계 | 524명(100%) |

11.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현황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의 경찰 조치 현황은 폭력행위 제지가 9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현행범 연행, 현장보존 조치 등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경찰조치를 대부분 80%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 조치 현황에 대한 대답으로, 현장에서의 피해자 상담과 조정 역할, 피해자 동행, 정보 제공이 있었으며 폭력을 제지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어려움과 신고취하를 했다는 응답도 찾아볼 수 있었다.

| | |
|-------------------------------|---------------|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취했던 조치현황 (중복 응답) | 524명 (대비율) |
|-------------------------------|---------------|

| | | |
|--------------------------------------|--|---------------|
| 폭력행위 제지 | 481명 (91.8%) | |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 | 452명 (86.3%) | |
| 피해자에게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 안내 및 설명 | 440명 (84%) | |
| 피해자들 관련 기관에 인도하고 동행 | 269명 (51.3%) | |
| 현행범 연행 | 425명 (81.1%) | |
|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사진 찍기 등) | 435명 (83%) | |
|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줌 | 456명 (87%) | |
|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가정폭력특례법, 기타 필요한 정보를 설명했음 | 439명 (83.8%) | |
| 그 외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화해를 많이 시키고 폭력의 심각성 등 교양함 • 접근 금지 조치 • 위로와 상담 • 어린자녀 보호 • 통상 가해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상담원 역할도 함 • 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하여 설득 후 칼을 영치함. 가족과 분리. 경찰이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하여 예방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다가 얼굴을 구타당함. 신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음 • 가족 간 상호 원만한 해결 도모 • 가정폭력 전단지(상담소 연락처 등)를 피해자에게 배부 | 25명 (4.8%)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가 대부분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대화가 대치 않는 경우가 있음 • 처벌 이후의 내용 등 상담(같이 살 경우 벌금 등으로 처리) • 피해자의 의사를 물음 •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가족과 형제 등에게로 인계 • 학교에 나가 가정폭력 예방 강의 실시 •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고지함 • 피해자가 보호시설 외 다른 곳을 원하여, 숙박업소로 동행한 경우도 있었음 • 폭행하고는 경우가 다름, 신고취하가 대부분 | |
|--|--|--|

12. 가정폭력 사건 개입 시 드는 생각과 느낌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드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범죄와 동일하다는 대답이 전체 대비 56.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외 피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대답이 51.5%, 부부싸움에 개입하는 것이 낫다라는 응답이 21.7%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사건에 개입한 경찰의 절반 이상은 피해자를 도울 방법과 범죄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각 51.5%, 56.3%) 그러나,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남편에게 대들거나 외도했거나) 인식도 24.2%로 나타나 흔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라는 피해자 책임론이 경찰 인식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 응답의 서술에는 벌금조치에 대한 문제, 개입의 효과가 없다는 대답과 부부간의 쌍방폭행도 증가한다는 대답도 나타났다.

| | | |
|---------------------------------------|--|-----------------|
| 가정폭력 사건 개입 시 드는 느낌과 생각 (우선순위 2개) | | 524명 (대비율) |
| 남편(또는 아버지)을 신고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 | 31명 (5.9%) |
| 가끔씩 생길 수 있는 부부싸움에 개입하는 것이 낫다. | | 166명 (31.7%) |
| 남편에게 대들거나 바람을 피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 127명 (24.2%) |
|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 | 295명 (56.3%) |
|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다. | | 270명 (51.5%) |
| 다른 사건도 많고 바쁘는데 사소해 보여서 귀찮다. | | 8명(1.5%)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 후 경찰관에게 처벌 특히 벌금은 내도록 하였다고 따질 수 있으니 조치하기가 까다로움 •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여 폭력이 더욱 증가하고 실제 처벌을 하며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실정이다.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사실혼관계가 많으며 일시적 만남을 그만두기 위해 신고하는 사실도 많다. •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일방적 폭행이 드물고 쌍방 폭행이 있음 • 사회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가정폭력은 남자만의 가해 요인이 아니다. 여성도 증가추세에 있다. | 14명(2.7%) |

13.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웠던 경험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음이 77.1%, 경찰의 권한이 한정되어 있음에 4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응답으로 피해자의 진술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경찰에 대한 원망과 공격, 경찰개입으로 가정이 파탄난다는 갈등, 폭력 제지의 어려움을 서술하였다.

| 가정폭력 사건의 적극적 조치 어려움(우선순위 2가지) | 524명 (대비율) |
|---|-----------------|
| 사건이 경미해서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 | 124명 (23.7%) |
| 폭력상황은 분명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았음 | 404명 (77.1%) |
| 피해자가 다쳤으나 본인이 알아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았음 | 19명 (3.6%) |
|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당사자들이 잘 해결 할 거라 생각했음 | 73명 (13.9%) |
| 지역 내에서 안면이 있는 집안이어서 관여하기가 어려웠음 | 32명 (6.1%) |
|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웠음 | 233명 (44.5%) |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경찰관을 과잉제지(당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음)했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잘 하지 않아 사건 접수의 어려움이 있음 • 처음에는 격앙되어 처벌 등을 원하다 나중에는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음, 경찰관을 원망 •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그 가족들의 미래 등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 27명 (5.2%)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가 되질 않음. 80%이상이 술에 취하여 있음. 술에 취한 여성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됨. 흥기 소지하고 경찰에게 시비를 함 • 거짓 신고함, 특히 여성들이 경찰을 이용하기 위해 • 서로 폭행 후 자기 주장만 내세움 • 가정의 계속적인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처벌 조치하기가 어려움 • 가정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 경찰관의 개입으로 이후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권 행사가 조심스럽다. • 경찰관이 개입하여 제지할 때 부부가 합심하여 경찰관을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었다. •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 불명확 • 사건처리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음을 신고자나 경찰관이 알고 있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경우 이 가정에 앞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 피해 경미하고 처벌의사 없으나 주취 또는 난동 시 제지 및 진정 시킬 때 무척 어려움. 법적 대응보다는 진정시키고 피의자를 달래었을 때가 효과적이었던 경험 (경찰관의 인내 요구) • 부부 상호 간 폭행(대항해서 폭행할 경우 등) • 폭행을 당할 시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나, 결국에는 고소를 원하지 않음 |
|--|--|

14. 가정폭력 사건에 대처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가정폭력 사건에 대처할 때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60.3%,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60.7%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폭력행위 빈도는 39%,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은 16.4%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판단기준으로서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 기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정폭력 사건 대처시 판단 기준(우선순위 2가지) | 524명 (대비율) |
|-----------------------------|---------------|
| 피해자의 피해정도 | 316명(60.3%) |
|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 | 86명(16.4%) |
| 피해자의 요구사항 | 318명(60.7%) |
| 가해자의 폭력행위 빈도(초범인지 상습범인지) | 204명(39%) |
| 기타 | 6명(1.1%) |

○ 인상 깊었던 지원 사례와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장 인상 깊었던 지원 사례에 대한 대답으로 대부분 피해자를 안전하게 관련 시설 등에 동행했거나 정보 제공 등 응급조치와 관련한 사례가 많이 예시 되었다. 또한, 가해자 입건 사례, 심각한 폭력 사건에 대한 사례와 아쉬웠던 사건처리, 원만히 해결된 사례 등 다양한 경험이 예시되었다.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강화와 격리제도 도입과 관하여 52명,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한 사항이 33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외 일상적인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가해자 교정, 상담치료 등에 대한 서술내용도 함께 조사되었다.

15. 가장 인상 깊었던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 사례 (응답전체 모음)

- 남편의 상습폭력 피해자를 00동 소재 여성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가 다시 순찰차로 수원역으로 데려가 역무원의 도움으로 타 지역 여성의 집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음
- 가정 불화로 경찰에 신고한 다문화 가정의 베트남 여성을 여성지원센터에(경찰 원스톱 센터) 인계하여 복지사에게 상장을 받게한 사례
- 부부가 성격 탓으로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원하지도 않으면서 자식 양육권을 주장하는 남편이 자식을 강제로 데려 가려고 하다가 처와 충돌,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 칼을 휘두르며 폭력을 한 가정 폭력 사건이 생긴다. 끝내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다가 형사 입건되었다.
- 15년동안 폭행당한 아내가 112신고하여 남편을 입건하였음, 신고 당일 아들 보약을 해주는데 남편이 성의가 없다고 선봉기로 폭행한 것으로 입건. 남편도 많이 누우쳤고 아내도 후회는 했으나 입건하여서 마음이 안 좋았음.
- 피해자와 자녀를 00동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생활하도록 모셔 놓고 가해자는 처벌한 사례, 피해자가 벌금형이 남편에게 나오자 당황하는 모습이 기억 남음
- 여자가 엄청 잘못(여자의 바람)을 하고도 남편에 그에 대해 격분하여 욕을 했거나 뺨 1회때렸다 하여 부인은 무조건 가정폭력으로 형법적 처벌을 바란다는 것을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며 여자는 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본다.
- 가정폭력에 너무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면 이혼율이 증가, 부부 간극이 더 깊어진다. (사건을 처리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 아들이 어머니를 폭력하고 또 접근하여 재차 폭력,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가해자에게 강제성 부족, 법적으로 피해자 고소시 즉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 필요(구치소 등으로)
- 남편의 상습 폭행 상담, 고소 절차 설명 후 사건 접수 받아 남편 입건 조회

- 가정폭력 사건을 법적 처리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의 들고 나중에는 경찰관 출동을 원망하는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다.
- 대부분 가정폭력사건의 시발은 비슷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폭행 및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위험한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소에 입소 거부를 하여 폭력 재발 우려도 있어서 지구대에 보호 하다가 다음 날 친지에게 인계함, 여러 유형의 범법자가 계속하여 들어오므로 보호가 어려움
- 00동 소재 아버지, 어머니, 큰딸, 작은 아들 가정의 가정폭력 아버지는 술을 먹으며 처와 자식들에게 폭행을 하는데 집에 보관되었는 장식용 칼을 들고 작은 아들의 등 부위를 쳐 상처를 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고 처에게도 수시로 폭행을 하므로 가정 폭력이 일상이 된 것으로 경찰관이 처벌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또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돈을 벌어서 안되면 생활을 할 수 없어 참는다는 말을 되풀이 함
- 4인 가족 모두가 상호 나누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처벌 의사가 없어 쉼터 및 가정상담소에 인계
- 부인이 이혼한다며 남편 폭력 행위의 적극적 처벌 요구
- 부부싸움으로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로 남편을 형사입건하였으나 추후에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왜 했냐고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음
- 베트남 처녀가 시골 남자에게 시집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맞게 되는 상황까지 와 여성상담소 ‘여성의 전화’로 인도해 전문가와 상담토록 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기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상담을 받아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었음
- 가정폭력 진단지(상담소 등 연락처 및 대처요령, 법률지원기관) 등 피해자에게 배부
- 의치증으로 이한 상습 가정 폭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

- 정신지체 2급인 부인을 수시로 폭행하여 참다못한 처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여 소장이 남편을 불러 남편을 상대하였다. 다시는 폭행하지 않는다는 각서 징수시 입회한 적이 있었다. (이후 다시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와 가해자 남편 형사처벌)
- 가정주부가 나체로 난동
- 여성상담소 소개
- 시택이 대구이고, 친정은 먼 곳인 여성 피해자가 남편과 집에 함께 있기 싫다고 하여 쉼터를 안내해 주었음
- 조선족 부녀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 보호기관 보호 인계 사례
- 가정폭력 발생하여 사건처리는 두 번째 일이고, 약 2시간 동안 남녀 따로 분리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내서 내면상태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한 사항
- 충분한 상담으로 이해시킴
- 행위자(남편)의 행동이나 행위가 난폭하여 현장 죄로 강제력 동원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족은) 경찰관 편이 아니다.
- 부부 간 가정폭력으로 수 회 신고가 들어와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후 사후 조치 방법을 가르쳐 줌
- 아들이 자격지심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사례
- 폭행정도가 심해 병원으로 인계 후 사후조치
- 여성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
- 피해자를 여성 보호 기관에 보호 요청
- 남편이 칼을 들고 부인을 위협했지만 부인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만 원해서 남편을 사건 처리 하지 않고 부인만 다른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 경우를 경험하였다. 칼을 들고 위협하였는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서, 두려웠을 텐데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의아했다.
- 아내(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보호조치를 원하여 00동 소재 여성의 쉼터(천주교 운영)에 인계한 사실 있음 (딸 2명까지 모두 인계)
- 사실혼 관계로 부인의 가족문제로 싸움을 하였던 부부로(경미사항) 약

1시간 동안 부부 간 욕설 및 해서는 안 될 사항을 알려주는 등 힘들었던 부분이 있음

- 00동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부부, 경제생활이 힘들어 남성이 여성을 구타하고 침대에 방화를 함. 칼을 소지하여 경찰이 들어오며 죽이겠다고 하여 대화 시도 후 여성의 외도 사실을 알고 서로 단절된 대화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후 화해시키고 현재 해산
- 부부 사이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 가정법률 상담소를 연락해줌

16. 현장 경찰의 입장에서 본 가정폭력 근절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응답 결과 (응답별 분류)

1) 법적 처벌강화와 격리제도 도입(52명 응답)

- 접근금지 처분 강화
- 경찰의 가해자 구속수사권, 접근 금지 명령권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야 함
- 엄중한 처벌규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 사법기관에서의 신속한 판결
- 즉각적인 접근 금지제도 등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 폭력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 가해자 격리 유치 교화제도
- 법원 판결까지의 가해자 격리제도

2) 피해자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 관련 홍보 확대 (33명 응답)

-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상담지원필요
- 야간에 입소가 가능한 임시피난처, 보호시설 확대
-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 상담과 보호시설의 전문화
- 국가기관의 정신적 치료 지원
- 의료비 구상권 청구로 피해자 위치 노출에 대한 조치 필요
- 피해 아동 보호조치제도

3) 인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 홍보활동 필요(25명 응답)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
- 인성교육과 의식교육, 가치관 교육

4)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필요 (9명 응답)

- 가해자 특별교육과 정신적 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의 음주 치료

5) 기타 (34명 응답)

- 평소 가족간의 상호이해
- 부부간의 비폭력 대화
- 112 신고
- 피해 아동 보호조치
- 경제적 안정
- 서로에 대한 배려

◆ 발표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피해자 노출사례

배인숙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상임대표

서울여성의전화 중부쉼터 관장

1. 여성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및 피해자 노출사례

- ① 2001년 전국의 쉼터 전화번호가 기재된 가정폭력관련 안내 책자를 여성부에서 발행,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자료 회수 등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아닌 구두사과에 그쳐, 등록된 모든 쉼터들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전화를 없애버리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② 2000년 6월 서울여성의전화 ‘쉼터’에 낯선 남자가 전화를 해서 자기 여자친구가 ‘쉼터’를 이용하려고 한다며 문의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쉼터’는 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도 전화번호를 알아서도 안되고 통화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당장에 ‘쉼터’가 난리가 났고 그 남자에게서 연락처를 여성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성부에 항의했으나 담당 직원은 뭐가 문제가 되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 ③ 쉼터 실제주소를 신고필증에 기재하므로써 쉼터가 노출되는 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은 남편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한

후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신을 원하는 여성을 보호해주는 비밀장소이기 때문에 쉼터 제1의 원칙은 피해여성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에는 쉼터의 실제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보호와 신변보장이라고 하는 본래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 규정에 얽매어 융통성 없는 공무원의 공무집행태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④ 2008년 5월 구청 담당 공무원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폭력남편(가해자)이 변경된 관할지자체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있는 지역이 가해자에게 노출이 되고 말았다. 쉼터입소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게 된 가해자는 구청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아내를 찾아내라고 하자 담당자가 쉼터를 알려주어 결국 그 내담자가 ‘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⑤ 2008년 성격장애질환을 가진 폭력남편이 시청으로 방문과 전화로 온갖 협박과 업무방해를 함으로 인하여 시청 보호시설담당자가 쉼터의 핸드폰번호와 쉼터 사무실전화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쉼터가 수시로 가해자의 전화협박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가해자는 쉼터와 시청 담당자에게 피해자를 쉼터에서 내 보내라고 협박을 함으로 시청보호시설담당자는 쉼터보호시설장에게 입소자를 쉼터에서 퇴소 처리하라고 했다.

쉼터에서 퇴소처리하지 않으면 시청 차원에서 퇴소처리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피해여성은 자존감이 낮아 아이 셋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며 겪게 될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옮기고 싶어하지 않았

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현재 입소 중에 있습니다.

2. 경찰에 의한 쉼터 피해여성 노출 사례

① 2008년 9월 XX씨가 남편(가해자)의 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하였고, 가해자는 딸들에게 엄마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고 끊임없이 협박을 하였다. 입소한지 2개월쯤 지나서 가해자가 A경찰서에 피해자 실종신고를 하였다.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00경찰이 피해자 딸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며 딸의 주변을 탐문수사 하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딸은 아버지(가해자)와 00경찰의 협박에 겁을 먹고 협박 사실에 대해서 쉼터에 알렸다. 쉼터에서는 00경찰이 딸에게 문의해 오면 “엄마는 가정폭력으로 1366을 통해 쉼터에 입소를 하셨으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하라고 알려두었다. 00경찰과 딸이 위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00경찰이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며 “엄마가 00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딸에게 지시했다. 딸과 통화를 한 후 피해자는 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공중전화로 00경찰에게 가정폭력사실과 쉼터입소 사실을 말했다. 00경찰이 통화 중 피해자에게 “남편(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다.

그 후 00경찰이 딸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엄마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여러 차례 종용했다. (00경찰이 알려준 내용은 공증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는 등의 내용)

며칠 후 00경찰이 딸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광주쉼터에 입소해 있다는 걸 안다. 엄마를 집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였다. 딸이 “쉼터 전화번호를 몰라서 통화 할 수 없다”고 하니 “114에 물어보라”며 협박조로 딸에게 “당신 통장도 조회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쉼터 측에서는 추석특별위

로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된 것을 추적한 것으로 추정함)

다음 날 딸이 컴퓨터에 전화하여 위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타 컴퓨터로 당일 연계함.

며칠 후 딸이 컴퓨터에 전화하여 아버지가 “네 엄마가 경기도 광주 컴퓨터에 있다는 걸 안다”고 했다고 알려주었다.

경찰에 의한 피해자 노출이 발생한 사건을 겪은 B컴퓨터에서는

1. 00경찰이 컴퓨터에 입소하였음을 확인 한 후에도 계속 수사를 하며 딸에게 협박조의 전화를 하였다.
2. 00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소한 컴퓨터를 알려주었다고 판단하였으며

B컴퓨터에서는 A경찰서 감사실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가정폭력특별법을 위반한 사건이므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00경찰의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② 2008년 도내 00 컴퓨터에 대한 경찰관 과잉 수사에 관한 사례이다.

자신의 이름을 밝힌 00형사로 부터 컴퓨터에 입소한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통화내용 : 누나 남편이 피해자 동반자녀들을 실종신고 했다. 형사가 “누나에게서 연락이오면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구함)

C시청에서 컴퓨터로 “00형사가 피해자와 아이들을 찾는 전화가 시청으로 왔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컴퓨터는 “1366에서 연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A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00형사가 “아이들이 어디로 전학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학교로 왔으며 A초등학교는 전학한 학교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컴퓨터로 연락을 하여 “컴퓨터 선생님이 직접 00형사에게 전화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확인을 해줘야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2번 정도 학교로부터 "왜 00형사에게 빨리 연락을 안하는가? 00형사가 학교를 수사하겠다고 하니 빨리 연락해 달라"고 다시 전화가 왔으며. 쉼터는 "지역1366에서 형사한테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00쉼터에서 지역1366 소장님에게 "본 쉼터에서 00형사에게 연락하게 되면 피해자가 있는 장소가 노출될 수 있으니 1366에서 00형사한테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고 그 뒤 1366 소장님에게서 전화 와서 00담당형사와 통화했으므로 사건은 종결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00쉼터에서 D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와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 : 피해자와 자녀들의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00형사는 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쉼터에 있다고 하는데도 수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 물음.(특히 사건 종결 시간 1시간 30분 후 00형사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한 일을 이야기함.) 어떻게 해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건지 물음.>

00형사가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자가 직접 가서 해제하면 된다고 했으며 PM 4시 30분경 쉼터소장 및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가출신고를 해제했다.

3. 피해자 및 보호시설종사자의 신변안전에 관한 건

- ① 2007년도 가정폭력상담소상담원이 가해자에 의해 칼로 위협을 당한 후 납치당하여 인질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사례가 있다. 현재 상담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6개월 진단을 받고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되어 치료받고 있는 상태이다.
- ②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쉼터에 들어오거나 이혼소송

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 절차상 경찰, 검찰,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가해자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신변보호를 필요로 한다. 특히 가해자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여 사설경호를 요청하게 된다. 그도 여의치 않은 경우 쉼터 실무자가 위협을 무릎 쓰고 동행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관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4. 주민등록법에 관한 건

① 주민등록 말소에 관한 건

2008년 9월초 000이 집을 나온 후 쉼터에 입소하였고, 폭력남편은 부천남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냈고 중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였다. 이후 000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실종신고를 해지한 상태 임, 그러나 담당자는 다시 남편이 찾아와서 실종신고를 내면 받아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다.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는 남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다시 말소신청하면 받아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아직 법적 남편이기 때문에 어디로 변경했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000은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을 친구의 집에 양해를 구해 옮겨놓은 상태이다.

②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건

2008년 7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동반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기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가 해당지역에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는 주소지를 이전해야한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가해자가 열람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찾으

러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피해자는 주소지를 먼 친척의 집주소로 옮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수이다.

2008년 9월 컴퓨터피해자의 전출입으로 가해자에 의한 주민등록증말소방지를 위해 '거주불명등록제(가칭)'법안마련을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건으로 알고 있음

문제제기 및 대안

1. 여성부 및 지자체 담당자관련 대안

① 공무원이 컴퓨터 종사자를 종용하여 피해자를 퇴소시키라고 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남용이며 가정폭력 및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처사이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위임 받아 피해자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 퇴소는 피해자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피해자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보호시설 운영권의 중차대하고도 심각한 침해이다.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공권력 남용은 컴퓨터운영과 피해자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컴퓨터 제1의 원칙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컴퓨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 하여야한다. 법인 사무실이 있으면 법인 주소로 하거나 혹은 관할 구청의 주소로 기재하는 등의 대안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며,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일선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업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최소 3년이상 근무토록하는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가정폭력 피해자 및 보호시설의 신변안전과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은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2. 경찰 관련 대안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경찰 및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비밀보장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18조 1항에 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수사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고, 피해자 보호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사실이나 피해자의 신변노출 하였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 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하고 피해자 및 보호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신변보호장치 마련

이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보호시설종사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특히 아내폭력피해여성이 가해자와 헤어지려고하는 순간에는 폭력의 위험도가 극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피해여성이 가정폭력사건으로 남편을 고소하였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 출석시 피해여성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실제로 또다시 폭력과 위협, 혹은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한 경우에도 조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여성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신변보호를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발표 4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상담사례 특성과 사례연구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1. 들어가며

2008년 9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자를 제외하고 106,000명에 이른다.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이 200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전체 국민결혼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정도에 와 있다. 이러한 숫적인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배우자라는 자격때문이지 정부와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는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삶으로의 이행을 꿈꾸며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주여성들이 겪는 반인권적 실태 역시 매우 심각하다. 그 심각성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007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16.9%(남성 10.5%, 여성 17.5%)가 폭력적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하였고, 9.0%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 우리 센터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상담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갈등이 34%, 이혼, 체류 등 법률문제가 38%로 사실상 가정폭력 관련문제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사회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들어섰으나 많은 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차이로 인한 고

층, 차별대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인식과 사회제도가 다문화에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 낯선문화와 낯선사람들을 경계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현장에서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이후 이여인터)의 상담통계와 사례를 보면서 그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2.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 유형과 특성

상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주여성의 경우에 생존차원의 '위기'상담인 경우가 많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낳는 오해와 갈등, 남편과 가족들의 학대, 또는 경제적 위기, 문화적 차이가 만드는 한국문화에의 일방적인 동화요구, 아내와 며느리와 자녀 생산자와 양육자,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인으로서의 요구, 불안정한 체류문제, 체류문제를 빌미로 한 협박 등등이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들이다. 이주여성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혼만이 아니라 이혼과정에서의 통역과 번역, 체류문제, 보호시설, 돌아갈 경우에 비행기 값 등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겹쳐진다.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에는 다문화 또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전 이해가 없이 한국생활의 동화를 당연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한국생활 방식을 너무 강요하면서 다른 기후와 음식과 문화, 가족관계, 사회제도에서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무지와 무시가 존재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서로 노력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도 많지만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을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조건의 한국인 남성들이, 나이 어린 아시아 여성들을 향해서 결혼을 매개로 비인권적인 행위를 강요하여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온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부장적인 의식과 태도를 강요하는 가부

장적 구조의 재구조화, 재강화 측면도 중요하게 점검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을 무기로 삼아,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멸시하고, 이주여성들이 아프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혼을 강요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면서 노예부리 듯이 하는 상황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각성과 개인의 의식성장과 삶의 태도변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곤과 경제 문제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할 때에는 본인 뿐 아니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일정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결혼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절대빈곤층이 52.9%나 된다. 이처럼 남편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때로는 남편이 아예 직장이 없거나 빚을 지고 있어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본국의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때가 많다. 여성들은 남편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본인이라도 벌어서 본국에 송금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여성들 자신도 한국어에 능숙치 못할 뿐더러 숙련된 기술도 없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한국에서 또 한번 가장 취약한 경제계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2) 한국사회 적응문제

①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문제

특정종교를 통해 결혼하는 여성들이 집단생활을 통해 한국어 연수기

회를 갖는데 비해,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국적령 가진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가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다. 자연히 남편,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적응에 무척 힘들어한다. 남편들도 답답해 하며 대화 자체를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한국어 실력이 기대했던 만큼 빨리 늘지 않는다면 답답해하며 여성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한다. 시집식구들은 여성들에게 빨리 한국문화를 배워서 적응하라는 심적 스트레스를 가하게 된다. 또 다른 경우는 여성들을 바깥 생활과 차단시키는 경우이다. 여성들이 도망을 가거나 좋지 않은 정보들을 습득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들이 자국 사람들과 만남을 갖거나 외부생활을 하는 것을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이 막는 것이다. 생활하는데에 가장 필요한 일차적 문제인 언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주여성들은 점점 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짐은 물론, 심리적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된다.

●임/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하는 여성들 경우에 첫 임신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임,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문제 및 빈약한 정보에 따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기도 힘들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육아문제는 더 힘든 문제다. 아이 젖 먹이는 방법이나 육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을 키우기도 한다.

(3)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통계를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심한 경우에 여성들은 매일같이 구타를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례로 우리 센터에서 상담했던 여성의 경우, 남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고서도 집에 방치되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되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거친 후 우리 센터에서 거주한 경우도 있었다. 남편들은 일단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와 의견 차이가 날 경우, 본인 내면에서 이는 분노의 감정과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여 강압적인 힘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아내에 대한 일상적인 작은(?) 폭력을 폭력으로 여기지 않는 폭력이 일상화된 한국의 남성주의 문화 또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구타함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부여해주기도 한다. 상습적 구타를 당하는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대부분이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심하게 떨며 어떠한 대책도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악의적 유기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집 밖으로 쫓겨나거나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아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여성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여성이 무엇을 잘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쫓아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근다거나 결혼초기, 여성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데려다두고 여성을 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버려 여성이 오갈데가 없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거의 감금 수준으로 여성을 집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4) 인권침해 :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 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특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로부터는 가정부 취급을 당하는 듯 여겨져 여성들 스스로가 나는 팔려온 것 같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결혼을 해놓고 남편이 초청을 하지 않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제삼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신분상의 불안문제: 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을 나가라고 내쫓아 놓고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들은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이주여성을 억압한다.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역시 이주여성에게는 무기가 되어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만큼, 이혼을 한다 할 때, 양육권과 면접권을 얻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제결혼 여성인권문제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다. 국적 취득을 통한 체류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몰리는 외국인 아내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체류권과 노동권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담유형 및 사례

실제 이주여성들이 당하는 차별과 편견은 일상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 힘들 정도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Xenophobia)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전제된다면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문화차이에 대한 문맹에 가까울 정도의 인식과 가부장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주여성들을 대하면서 인권침해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다. 여기에 상업적인 이익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중개업체가 거짓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성사시키면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양산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여성들의 고통어린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가족들도 국제결혼을 너무 안이하고 쉽게만 생각하여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담의 대상은 한국에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으로 취업비자, 관광비자, 미등록 노동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등이 있다. 이들의 상담은 임금체불에서부터 성폭력, 출산,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체류상담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접수된 상담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가정폭력, 이혼(양육권/위자료), 성폭력, 법률(국적,비자,기타)상담, 기타(취업,의료,쉼터안내등), 가족갈

등(부부간,시댁)으로 나눌 수 있다.

(1) 결혼과정에서의 문제상담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알려져있다. 2008년6월부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만 중개업에 의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국인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유지하려 노력하고, 현지 중개자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개업체들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짧은 일정의 결혼과정과 남성들의 의사만을 위주로 결혼을 진행시켜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 거짓정보를 제공해서 여성들을 힘들게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계약을 한 뒤에, 결혼이 파탄으로 끝났을 경우에 중개업체들이 이주여성들을 보호시설에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즉 남편의 직업, 신체상태, 결혼유무 등- 한국에 들어와보니 소개받은 상황과 달라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배상을 받고 한국에 머물 수 없겠느냐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사례1)

요즘 한국 남성들에게 1,100만원을 받는다. 이중 320-370만원은 베트남측 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는 한국업체의 몫이다. 물론 한국업체는 남편의 비행기 값이 포함되고, 베트남 측에 보낸 돈에는 베트남에서 소용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실제 베트남측에 돌아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결혼식도 소홀하고, 호텔도 싼데 머문다. 한국 측 몫 중에는 만약에 지역에 있는 커플 매니저가 자신에게 한국인 남성을 소개시켜준 경우에는 소개자에게 200-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내가 직접 한국 남성을 모집했으면 이 200-300만원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한국인 남편들은 자신이 지참금으로 준 돈이 베트남 여성에

게 가는 줄 알지만 중간에서 현지 베트남 브로커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한국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여성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사례2)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R씨는 결혼한 지 8일 만에 가출했다. 맞선 볼때부터 남편은 심하게 말을 하지 dskg아 이상해서 중개업체에게 물어보았지만 중개업체에서는 원래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지금 수줍음을 타서 그런 것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개월 살다가 못살겠으면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남편은 심한 언어장애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 남편은 성관계도 하지 않고 대화도 없다. 본인이 이혼을 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중개업자가 여성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혼하려면 결혼에 든 비용 1,5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이혼한 뒤, 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1) 가정폭력

권력관계의 하위를 점하고 있는 여성들 특히 외국인이주여성들에게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형태로 언어(정서)폭력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며 가해자는 남편뿐만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들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언어폭력에는 “나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 “너 돈벌러 왔지, 돈 벌면 너네나라로 다 빼돌릴거지”“너는 가난한 나라에서 나 만나 한국에 올수 있었으니 내가 하는말 다 들어, 안그럼 여기 불법으로 있는 친척들 다 신고할거야” “너는 외국인이라 내가 죽여도 몰라, 너 죽여서 토막내 산에다 물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도망갔다고 말할거야”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크게 상처받고 있다. 물리적인 학대도 일어나는데 뺨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여성의 옷에 불을 지르고 추운 저녁에 내쫓기도 한다. 어떤 남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은 전체상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으로 30%에서 45%에 이르기까지 월별 차이는 있으나 약 35%에 이른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상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국 법과 언어를 잘 모르는 여성들의 경우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3) 2006년 중국여성 L은 한국에 입국하였다. 남편과 둘이 살았는데 남편은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부인에게 잘 대해주지만 술만 마시면 남편은 난폭하게 변한다. 술을 마시고 새벽 1,2시쯤 귀가해서는 집안이 어지럽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는 눈이 마주치면 노려본다고 때리기 시작한다. 손발로 머리며 어깨며 온 몸을 때렸다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2번쯤 그런 일이 있고나서는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에서는 와서 보고 남편이 아무 일 아니라고 하자 그냥 돌아가버렸다. 이대로 집에서 살다가는 남편에게 맞아 죽을 거 같은 두려움이 들어서 견디기 어렵다.

사례 4) 2007년 10월 경에 상담한 몽골여성 A씨는 한국에서 결혼한지 9년째였고 3살된 된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 2004년 11월에 귀하허가를 얻었고, 한국법원으로부터 국적포기서류가 도착하여 현재 몽골에 보낸 상태였다. 결혼 6년째 되었을때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동안 부부로 살아왔기에 묵인하고 살기로 하였다. 자신이 직장에 다닐때는 생활도 안정적이었으나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자 남편이 괴롭히기 시작하여 스트레스로 조산하였다. 그후 부터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때리기 시작하였다. 한번은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길래 무서워서 옆집에 잠시 피신했더니 쫓아와서 행패를 부려 할수없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방에 가둬놓고 때렸고 방문을 간신히 열고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

사례 5) 결혼한 지 6개월된 베트남 여성 L씨는 집에서 가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동안 남편에게 4차례 구타를 당하였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남편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길에 혼자 버려두었다. 무서워서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결혼중개업체에 연락했고 남편이 데리고 갔다. 그 이후로도 계속 나가라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욕을 했고 남편은 때렸다. 이혼하자면서 결혼반지를 돌려달라고 했고 안 주었더니 중개업체에 가라면서 또 길에 혼자 버려두었다. 중개업체에 연락했더니 남편이 데려갔으며 또 때렸다. 집에 손님이 온 틈을 타서 도망쳐서 경찰과 1366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2) 이혼(양육권/위자료)

언어,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이 양육, 그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상담이 일반적이며 몇몇 여성들의 경우는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문도 모르고 남편손에 이끌려 협의이혼당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있게된다. 또 어떤 여성들은 사정상 동의하에 남편과 떨어져 살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가출신고를 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사례 6) 같이 사는 동안 남편이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임신했을때도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때리기도 했다. 아이 출산 후 분유값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먹을것도 별로 없어 병원에서 영양실조라고 했다. 남편이 아이만 두고 나가라고 하고 때리니까 아이 데리고 나왔다.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다.

사례 7)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Q(거주 6개월)씨는 남편이 성매매업에 종사하

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로 했지만 모르는 척 하고 지냈는데 Q가 화가 나서 이혼하자 한 말을 받아서 당장 결혼업체 사람을 불러서 협의이혼동의서에 사인하게 했다. 임신 3개월째인데도 낙태시킨다고 했으며, Q씨가 이혼하면 당장 베트남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사과했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녹음과 협의이혼동의서를 가지고 법원에 갔으며 자신이 한국에 있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사례 8) 43세의 중국결혼이민자 B씨는 2004년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은 재혼이고 전처가 정신지체 5급이었으며, 전처 아들도 지체가 있는지 아직도 대소변을 못가린다. 아기를 안 낳는다고 못살게 굴었으며, 아들을 낳아서 3살 되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물건을 던지고 심한 욕도 한다. 남편이 일도 못하게 하여 미칠 것 같아서 이혼하고 싶고 양육권을 가지고 싶다.

(3) 성폭력

결혼한 여성들에게 부부간을 포함한 원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논쟁이 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힘들지만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의처증이 의심되는 남편이 부인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게 한후 검사를 하거나, 구강성교, 항문성교등을 강요, 별거를 논의하며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술마시고 들어와 손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시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적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4) 법률(국적,비자,기타)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체류는 현행법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여성들은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라 볼 수 있다. 가정갈등이 발생

하게 되면 가정해체를 고민하게 되고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체류연장, 영주비자와 국적신청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뤄진다. 그러나 체류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힘든 상황을 감수하거나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사이 불법체류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몇몇 남편들의 경우는 체류연장이나 국적신청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사례 9) 21세의 베트남여성 W씨는 2005년 한국으로 시집왔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한국어를 배우려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남편은 밤마다 심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W씨를 괴롭혔다. 심지어 남편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집안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심하게 구박하였지만 W씨는 잘 살아보려고 참고 노력하였다. 4개월쯤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싫어하니 베트남에 잠깐 가 있으면 내가 어머니를 잘 설득하겠다는 말과 함께 베트남에 가기 싫다는 여성을 억지로 베트남에 보냈다. 베트남에 도착한 이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고민하던 W씨는 할 수 없이 혼자 6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남편은 전화번호, 집주소 등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지 몰랐던 W씨는 혼자서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가 얼마전 우리 센터에 찾아왔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확인을 한 결과 이미 여성이 베트남에 가 있을 당시 이혼이 되어 있었고 여성은 그간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한 꼴이 되어 있었다.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더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이 나왔다. 여성은 현재 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인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도 할 일도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합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5) 가족갈등(부부,시대)

한국의 가족관계는 비교적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담론의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 변화가 있지만, 국제 결혼을 하는 40대 50대 남성과 그 가족들의 연령대와 의식구조를 볼 때,

여전히 가부장적인 관습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여성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사를 다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무시하고 하인부리듯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사회주의권에서 상대적으로 양성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살아왔던 여성들에게 한국의 부계중심 가족문화는 낯선 데다가 불신과 무시하는 분위기는 견디기 힘들게 한다. 심한 가부장적 의식과 문화를 가진 가족일수록 정작 본인들은 이주여성들에게 ‘너무 너무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며, 여성들이 철이 없고, 게으르고 고집이 세어서 자신들의 사랑과 정성을 몰라준다고 목소리 높인다는 점이다. 또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머슴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집안 대소사에서는 의사발언권이 전혀 없는 경우, 아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성이 일하여 번 돈의 일부를 친정에 보내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이다.

사례 10) 남편이 도움을 요청한 사례로 부부상담을 해보니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점점 불만이 되어 이혼까지 거론되었다.

남편입장 : 부인이 한국에 오자마자 통장을 들이밀며 돈을 친정에 부쳐주길 요구해서 불쾌했다. 그러나 어려워하니 생각하며 매달 10만원씩 부인이름으로 적금 들어서 신혼여행 갈 때 베트남에 가져가겠다고 말해줬다. 여기저기 베트남식당을 데리고 다녔지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고 베트남 식재료를 사줘도 요리도 하지 않는다. 옷값이 싸지 않는데 여러벌 사달라고 한다. 일을 하겠다고 했으나 내가 일을 하니 못하게 했다.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가와 같이 만나러 가자고 했으나 안간다고 고집부려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술을 자주 마실 수 밖에 없다.

부인입장 : 한국에 오기 위해 부모님이 약 300만원 가까이 빚을 졌고 브로커가 한국가면 남편이 돈 잘 버니까, 그리고 직장을 구해 줄테니 벌어서 쉽게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와보니 남편이 잘살지 않았다, 일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못하게 한다. 나는 북쪽 출신인데 남편이 데려가는 식당은 남쪽 식당이

라 입에 잘 맞지 않았다. 베트남 야채를 사줬다기 보다 남편이 사고 싶은 재료만 샀다. 나는 아직 젊어 예쁜 옷 많이 입고 싶은데 사주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스타일로만 입어야 한다.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갈 때 자꾸 데려가는데 말도 통하지 않아 재미도 없고 차멀미를 하니까 가기 싫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뽐뽐하는 것도 참 싫다.

사례 11) 베트남 여성 A씨는 20세였고 남편은 30대 초반이었다. 남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라 말을 하는 목소리가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무서웠다. 26살 된 시누가 오빠의 생활에 여러 가지 간섭을 하였고 시부모님도 집안의 문제를 딸과 의논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집안 일을 많이 시켜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다. 몸이 아파 남편이 병원에 데려가주었는데 자궁에 근종이 생겼고 스트레스와 저혈압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시집 가족 모두와 A씨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아기도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하였다. A씨 역시 시어머니를 몹시 무서워하던 차에 분가를 원했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독립할 능력도 안 되고 어머니 말씀을 거스를 용기도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무척 고집이 세다고 말하면서 만약 여기서 계속 살려면 남편과 시부모님 말에 복종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까지 하였다. 이중에 남편은 어떤 자기의 주장도 하지 못했으며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여성을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다.

(6) 기타(취업,의료,쉼터안내)

일반적인 유형이외 많은 다양한 상담들이 접수된다. 위장결혼에 따른 비용착취, 출산 지원을 요청하거나 낙태비용을 요청하는 사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취업에 대한 문의

등 다양하다.

사례 12) 남편이 일도 안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아이가 생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아이를 낳고 8년간의 결혼생활을 했지만 남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더 이상을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아이들을 무책임한 남편에게 남겨두고 나올 수도 없고 데리고 나오자니 일을 하면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24시간 놀이방에 맡기고 그동안 방을 얻을 수 있도록 저축해야 할 것 같은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찾아갔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놀이방을 아는지 문의상담.

4. 이주여성 상담의 한계 및 방향

이주여성을 상담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가정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에서도 여성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기도 제공하기도 어렵다. 또한 통역원과 함께 3자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내담자의 정확한 심리상태나 문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장의 문제해결이 어느정도 가능해진 이후 깊은 내면적 치유를 위한 상담으로의 진행이 어렵다. 또한 살아 온 문화적 환경과 교육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상담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여성 상담을 위한 상담원들의 정보교류와 서로간의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들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사회시스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적 혜택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폭력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저항하고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맞고 난 이후 증거가 없어 여성들이 이

혼 후 원치않는 귀국이나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또한 지원체계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상담원들 역시 정보에 대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상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주여성과 관련한 법률 및 지원체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공부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일차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주여성들의 체류상태가 남편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체류의 불안정함이 의사결정에 큰 변수가 된다. 어떤 여성들은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의 체류상황까지도 남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특히 불법체류인 경우 신고의 위협)이 발생하기도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상담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여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체류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과 법률적 요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간의 법적연계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여성이 입국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큰 비용을 지불하여 법적대리인을 내세우기 어려워 그대로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인신매매성 이주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여성 개인에게 해결의 책임을 묻기보다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5. 맺으며

낮선언어, 낮선문화를 접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어려움을 주류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갈등으로 폭발하여 서로가 상처를 입힐 수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국제결혼이 늘어가면서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나 이들을 받아들이기엔 한국사람 들도 한국시스템도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라는 것을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다. 이주는 전세계적인 흐름이고 한국 또한 국제결혼과 노동이라는 형태로 그 흐름에서 비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들을 위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제 종합 토론

토론 1] 경찰초기개입 지원과 효과

신동욱 경감 (경찰청 여성계)

토론 2]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방안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3] 피해자 안전확보 제도 현황

박동혁 사무관 (여성부 인권보호과)

토론 4] 피해자 안전권리 확보를 위한 연계망 구축

황정임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1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초기개입 지원과 효과¹⁾

신동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 차 | 례 |
|----------------------------------|----------------------------|
| I. 서론 | IV.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 |
| II.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과정 및 조치사항 | 1. 경찰단계 임시조치권 확대 |
| 1.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 2.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
| 2. 수사진행 및 임시조치 신청, 검찰 송치 | V. 결론 |
| 3. 가해자의 특성 | |
| III.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 |
| 1. 경찰 조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 |
|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 |
| 3.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부재 | |

I. 서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특법)’이 제정,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10년이 경과하였다.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가정내 폭력행위가 분명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많았으나, 가특법 시행을 통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1) 본 토론문 2007년 11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최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포럼”에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총경께서 발제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체계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을 논제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은 가정폭력 처리절차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매뉴얼 발간²⁾ 및 교육 등 경찰관 인식전환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왔다.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초기대응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의 최일선 기관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보호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가특법은 입법적 불비로 경찰의 가정폭력 상황에 대한 성공적 개입을 저해하기도 한다. 특히, 경찰의 위협예방적 활동을 경시한 채, 지나치게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법적 시각만으로도 다루려고 함으로써 경찰의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권발동을 위한 일반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조차도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토론문은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초기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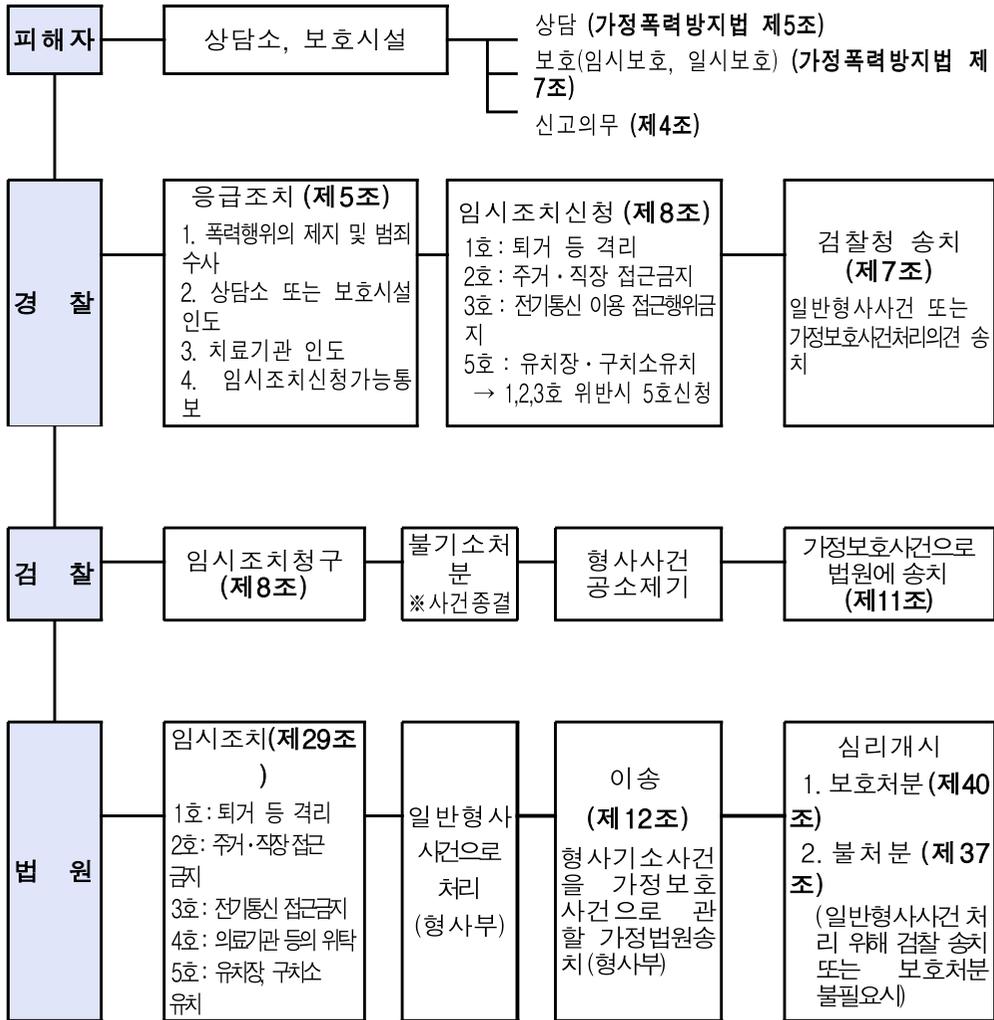
II.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과정 및 조치사항

가특법³⁾에 따른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는 가정폭력사건 발생 → 경찰신고 → 경찰 현장출동 → 응급조치 → 수사진행 및 임시조치 신청 → 검찰송치 →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법원의 조사·심리 → 보호처분결정 또는 일반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 등의 과정을 거친다.

2) 범피해자 보호 매뉴얼(가정폭력, 아동학대), 지역경찰업무 매뉴얼(가정폭력사범 처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개정 등.

3)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는 형사사건의 기본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 가특법을 우선 적용하고(가특법 제3조),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가특법 제18조의2)

<가정폭력사건 처리 흐름도>



1.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정폭력 검거 경위를 볼 때 94%이상을 112 범죄신고 등 신고를 통해 경찰로 최초 접수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특성상 경찰의 순찰활동 등 적극적인 인지 보다는 피해자 및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 이웃 등에 의한 신고에 의존하고있다.

<검거 경위별 세부현황>

| 구 분 | 계 | 신 고 | | | | 고 소 | 자 체 인 지 |
|-------|--------|--------|-------|---------|---------|-----|---------|
| | | 소 계 | 피 해 자 | 신 고 의무자 | 기 타 신 고 | | |
| 2005년 | 11,595 | 11,012 | 9,777 | 105 | 1,130 | 460 | 123 |
| 2006년 | 11,471 | 10,836 | 9,404 | 53 | 1,379 | 551 | 84 |
| 2007년 | 11,744 | 11,068 | 9,421 | 127 | 1,520 | 635 | 41 |

경찰에 신고·접수되는 112신고는 '05년 5,012,070건, '06년 5,408,884건, '07년 6,227,664건에 달하는 등 모든 사건을 접수·처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1) 「신고 접수시」 조치사항

신고접수 경찰관은 피해자가 대부분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정확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접수시 정확한 발생장소(주소), 급박한 상황인지 여부, 응급차나 다른 조력이 필요한지, 가해자가 현장에 함께 있는지, 곧바로 폭력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안전상태 및 범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 「현장 출동」경찰관의 조치사항

현장도착시 소속·계급·성명 및 가정폭력범죄 수사활동 개시를 고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상태와 가택내부를 확인한다. 폭력이 진행중 또는 직후라고 판단될 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강제원리에 입각,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택내로 진입한다.⁴⁾ 또한 가해자가 가정사 개입이라고 항의할 때에는 위법행위임을 고지하고 엄정한 자세를 견지토록 하고 있다.

4) 유형력 행사 가택진입 법적 근거 : 형소법 제216조 제3항(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제7조제1항(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기타 경찰강제시 조리상 한계(긴급성,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3) 「현장 입장시」 조치사항 및 응급조치(가특법 제5조)

경찰관 현장입장시 폭력행위 제지 및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한다.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후 치료기관인도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 신고자,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한 응급조치보고서⁵⁾를 작성한다. 또한, 향후 사건처리과정과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절차 설명⁶⁾ 및 가정폭력의 재발우려시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상담소·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희망할 때에는 상담소 등에 인도하고, 전국 15개소에 운영중인 ONE-STOP지원센터와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등 관련NGO 단체를 연계·안내하고 있다.

4) 「현장 조사시」 조치사항

현장조사시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가옥내에서 조사하고, 가해자는 순찰차 안이나 가옥 밖에서 신문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한다. 피해여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락조치를 하고, 사안이 경미해도 상습피해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한다.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피해자가 동행을 원하는 사람의 동행을 허용하고 있으며⁷⁾,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제2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수시 교육하고 있다.

2. 수사진행 및 임시조치 신청, 검찰 송치

1) 「조사 경찰관」의 조치사항⁸⁾

지구대에서 초동조치가 끝난 가정폭력사건은 경찰서 폭력팀 등

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26호) 제225조 응급조치

6) 가특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12조(법원의 송치) 규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시 검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토록 규정되어 있다.

7)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67조 3항

8) 범죄수사규칙 제224조(가정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해당 수사부서에서 임시조치 신청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가정폭력 사건 조사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서로 출석일(시간)을 달리하는 등 분리조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시차를 두고 귀가조치하는 등 폭력행위 재발방지에 유의하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토록하고 있다⁹⁾.

또한 피의자를 귀가조치할 때에는 폭력재발시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신청·집행 될 수 있으며, 수사내용에 포함됨을 고지하여 추가적 폭력을 예방하고 있다.

2) 임시조치 신청(가특법 제8조, 제29조)

경찰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인정될 시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유치장 등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9) 가특법 제18조(비밀엄수등의 의무)

<응급 및 임시조치 현황>

| 연 도 | 응급 조치 | | | |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 | | |
|-------|----------------|-------|-----------|-----------|----------------|-----------|-----------|-----------|
| |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 의료기관 인도 | | 신 청 | | 집 행 | |
| | 건수(건) | 인원(명) | 건수 (건) | 인원 (명) | 건수 (건) | 인원 (명) | 건수 (건) | 인원 (명) |
| 2003년 | 819 | 802 | 901 | 915 | 1,140 | 1,144 | 829 | 837 |
| 2004년 | 894 | 925 | 688 | 702 | 656 | 658 | 359 | 360 |
| 2005년 | 1,589 | 1,703 | 631 | 641 | 451 | 447 | 234 | 233 |
| 2006년 | 1,449 | 1,628 | 883 | 897 | 583 | 511 | 240 | 299 |
| 2007년 | 1,806 | 1,849 | 797 | 803 | 422 | 426 | 243 | 243 |

3) 검찰 송치 및 종결

가정폭력사건의 수사자료는 보호처분 등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환경조사서¹⁰⁾를 작성,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송치하고 있다.

송치시 경찰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¹¹⁾이로써,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절차는 종결되게 된다.

10) 범죄수사규칙 제226조(환경조사서의 작성)

11) 가특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 구분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조치 | | |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 | |
|-------|--------|--------|-----------|---------------|-----------|------------------|------------------|
| | | | 구속 | 불구속 | 기타 | 건수 | 인원 |
| 2003년 | 16,408 | 17,770 | 496 | 16,787 | 487 | 4,186 | 4,459 |
| 2004년 | 13,770 | 15,208 | 329 | 13,969 | 910 | 2,587 | 2,616 |
| 2005년 | 11,595 | 12,775 | 181 | 11,800 | 794 | 1,881 | 2,022 |
| 2006년 | 11,471 | 12,837 | 113(0.9%) | 12,011(93.5%) | 713(5.6%) | 1,722 (15%) | 1,903 (14.8%) |
| 2007년 | 11,744 | 13,165 | 87(0.7%) | 12,587(95.6%) | 491(3.7%) | 1,455 (12.4%) | 1,629 (12.4%) |

Ⅲ.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 신변안전 확보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바로 경찰의 초기 개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찰관의 위기개입 행동의 미진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상의 문제를 포함한 법률 시스템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다.

1) 가특법 제5조의 문제점

경찰 초기개입의 중요한 근거법은 가특법 제5조와 경직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특법 제5조의 규정은 가해자의 현재 혹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 출동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한 후 현행법 내지 긴급체포가 곤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토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의 현장철수로 가해자의 보복 등 피해자의 위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에 의한 가해자의 격리를 통한 피해자의 안전확보가 문제가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¹²⁾와 긴급체포¹³⁾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없는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서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를 감행하는 경찰관이 실무적으로 드물 수밖에 없다. 또한, 체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에 대한 사후 피해자의 감정변화 등 가정폭력 자체의 특성상 체포를 꺼리게 되는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 경직법 제4, 5조의 문제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또 다른 근거로 경직법 제4조¹⁴⁾의 보호조치 규정과 동법 제5조¹⁵⁾의 위험발생 방지 규정을 들 수 있다. 하

12) 형소법 제211조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13) 형소법 제200조의3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14) 경직법 제4조 (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사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5) 경직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

지만, 제4조의 경우 가해자가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등 요보호자 일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서에 24시간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제5조를 근거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여부 자체와 경고, 피난 이외의 구체적인 조치유형이 무엇인지 경찰재량에 일임하여 경찰권 행사의 명확한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외국의 사례¹⁶⁾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은 경찰의 체포의무 규정(Mandatory arrest laws)을 두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가 폭력을 행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를 물리적인 상해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자를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1994년에 이미 22개 이상의 주에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영장 없이 강제적으로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시 현장에 출동,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일단 석방한 후 차후에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영국 경찰 또한 1987년 이래 적극적인 체포정책을 채택하여 오고 있다.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1) 현행 규정과 한계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자에 대한 퇴거등 격리·접근금지·유치장 유치 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거규정이다. 그

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16) 경찰청, 해외주재관 테마기획 제17호, 각 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2006

러나 실무상 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결정하는데까지는 1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격리조치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를 재범의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와 임시조치신청을 완료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귀가조치하였으나 임시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 **임시조치 결정전 재폭행 사례** (덧붙임 1-4)

“2007년 11월 5일 마산시 00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바,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격리조치가 필요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구속사유 없어 귀가조치 하였으나, 귀가한 가해자가 재차 피해자를 폭행함” (경남 마산동부서 수사과)

이러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경찰관에게 행위자에 대한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개정안 발의 및 폐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에게 임시조치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 2005년 6월 홍미영의원의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우윤근 의원안, 박명광 의원안, 이계경 의원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장출동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격리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응급·임시조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 의원발의 임시조치권 내용 》

| 발의 의원 | 발의일 | 주요 내용 |
|--------|------------|--|
| 홍미영 의원 | '05. 6. 13 | '응급조치' 규정(제5조),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48시간이내 격리조치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우윤근 의원 | '05. 11. 7 | '임시조치 청구 등' 규정(제29조), 범죄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 박명광 의원 | '06. 6. 30 | '응급조치' 규정(제5조), 현장 임장 사법경찰관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48시간 격리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 |
| 이계경 의원 | '06. 12. 1 | '긴급 임시조치'(제8조의2), 피해자 등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접근,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한 후 검사승인 받도록 규정 |

그러나, 2007년 7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위 4개 법률안을 폐기하고 법사위원회 대안으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경찰 임시조치권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3.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부재

현행 가특법은 퇴거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치장 유치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수단이다. 현행 규정에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실제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기도 한다.

☞ 임시조치 위반 재폭행 사례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집행된 후, 또다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폭행한 경우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로 임시조치 신청하면 대부분 영장 기각됨” (광주서부서)

IV.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

1. 경찰단계 임시조치권 확대

현장출동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즉시 퇴거 등 격리·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영장없이 현장에서 경찰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후 48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해 선조치 후 일정시간 이내에 검사나 판사의 승인이나 사후허가를 득하도록 한다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관계의 특수성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미국의 경우처럼 가정폭력 가해자의 의무체포제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접근제한 등의 보호처분처럼 역시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시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똑같이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법적지위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호처분 위반은 벌칙과 과태료처분 규정이 있고, 임시조치 위반은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법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시조치 위반시 보호처분 위반의 경우와 같이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피해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나 여성단체와 경찰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시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다.

V. 결론

가특법 시행 10년 동안 경찰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관련 NGO단체의 수많은 홍보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전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일소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가정폭력이 대를 물려 계속되고, 폭력의 심화로 이어져 중국에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최일선 법집행 기관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및 현장출동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엄격한 법집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출동경찰관의 임시조치권 확대 등 관련 법률개정이 미비로 효율적인 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남는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관련 관련단체와 정부기관의 관심을 다시한번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금형(2001),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재민(2006),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김병준(2004), 가정폭력범죄론, 법문사
김은경(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중희(2007),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을

위한 공청회, 법무부

경찰청(2007), 2007 여성·학교폭력 지원사례집

경찰청(2007),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경찰청(2006), 해외주재관 테마기획(제17호)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경찰청(2005),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NGO와의 간담회 회의서류

경찰청(2005),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 토론 2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방안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들어가며

결혼이주자의 가정폭력 피해는 가정이라는 은밀한 공간 안에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구조의 작동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국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와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적 지원으로부터의 배제, 한국 사회 내 동원 가능한 사적 지원망의 부재로 인하여 결혼이주자는 더욱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국제결혼 가정 내 더욱 왜곡된 권력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정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다수의 실태조사와 현장 단체의 상담을 통해 많은 결혼이주자들이 결혼 이주 후 유·무형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결혼이주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선결과제로서 안정적인 신분 보장의 문제

(1) 가정폭력 피해에 취약한 결혼이주자의 법적 지위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처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형사 고소고발 여부 및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 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 소요되는 3년~4년 기간 동안¹⁷⁾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할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야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있다. 또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국적 신청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및 신원보증 유지 등과 같은 조력이 필수적이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거나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면 결혼이주자는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결혼이주자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에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97년 국적법 개정으로 요구된 국내거주기간 요건에는 외형적으로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한다는 목적이 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제결혼 가정을 2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그 적정성과 합리성이 의심된다. 2년

17) 국적법 제6조에 따른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2년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귀화 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이 1년~2년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결혼이주 후 한국 국적 취득까지 총 3년~4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가정에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부부 간 협상과 타협을 불가능케 하여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은 이후 국적 심사 과정의 실질화 및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하여 사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혼인과 동시에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신분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장 선결적인 지원 정책일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경우 노동을 통한 이주와 달리 국내 법·제도적으로 ‘정주’가 허용·전제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라는 매우 친밀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혼 이주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신분 보장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규정 도입

가정폭력 피해를 피해 친구의 집이나 쉼터로 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가출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신원보증철회 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신원보증철회가 되면 결혼이주자의 비자(사증)의 효력은 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비자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서류인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가 흠결되었기 때문이다. 출입국마다 행정 처리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결혼이주자는 유효하지 않은 사증을 소지한 것이 되어 소위 ‘불법’ 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이후 출국 명령,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강제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 진행 과정은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주자의 주소지인 남편의 주소지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주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 조

차 박탈당하게 된다. 결혼이주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국적법 상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귀화 신청 자격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신고만으로 강제퇴거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간 모순을 해결하고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주여성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결혼이주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관련 민사·형사·가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무형적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명문화

앞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권미주 선생님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 결혼이주자가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유형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언어적·경제적·성적 학대 또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현행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결혼이주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경우 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자는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형사·가사소송의 판결문 등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없이 단독으로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이주자가 위 국적법 조항에 따라 체류 연장 허가과 귀화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다든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재 법무부의 국적 행정업무 관행이다. 결국 우리의 법제도는 결혼

18)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주자에게 죽을 만큼 얻어 맞으라고, 증거자료가 충분해질 때까지 참고 폭력을 당하라고 권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가장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는 한국인 남편이 변심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의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한국의 가족법도 과거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 행사로 목인되었던 축출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결혼이주자가 협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버티고 살면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자의 법정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이혼 선고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국인 여성이라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가족·친구 등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협의 이혼 요구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지원 없이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결혼이주여성은 몇 달도 채 버디치 못한채 협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 때 결혼이주자가 임신했다면 낙태 강요가 수반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원치않는 이혼 강요, 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감금,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또한 무형적 폭력으로서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실제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자들은 협의 이혼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어떠한 선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에 명문 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 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 보장 및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법률지원¹⁹⁾,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19)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여야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률구조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구축

2005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²⁰⁾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적 취득 이전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최저생계 지원 보장이 도입되었으나, 그 대상을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즉 2004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한 결혼이주자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도 체류 연장 및 귀화 신청은 가능하도록 된 반면,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국적 취득까지 소요되는 3~4년 간의 최저 생계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배제한 채 체류 연장과 국적 신청 자격만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격을 행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자에 대하여는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만 가정폭력 피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2004년에 개정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스스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우 희박한 일일 것이다. 또한 내국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이고 국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설된 국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아가 계속 개선되어가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 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내국인의 가정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내국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기금 등을 형성하여 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법률구조 공단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구조 현황]

| 기 간 | 민 사 등 | | | | | 형 사 |
|---------|-------|-------|--------|-------|-----------|-----|
| | 계 | 소송전구조 | 소장등 구조 | 소송 구조 | 구조금액 | |
| 계 | 960 | 10 | 825 | 125 | 5,540,960 | 336 |
| '05 | 759 | 6 | 700 | 53 | 3,794,724 | 72 |
| '06 | 80 | 2 | 55 | 23 | 828,905 | 61 |
| '07 | 80 | 1 | 48 | 31 | 594,739 | 102 |
| '08. 7. | 41 | 1 | 22 | 18 | 322,592 | 101 |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자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조치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내국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있어서 결혼이주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는 당연하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존재한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노력,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혼인관계 종료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개입 및 사회적 지원 체계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접근권 보장은 우선적으로 충분한 통역 서비스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경찰이 초기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적절한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하여는 신고받은 경찰이 결혼이주자의 피해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스톱지원센터 및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쉼터 등 지역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에 대한 고민과 자원 배분이 필요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결혼이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으로 이주자로 빈곤한 계층으로 삼중으로 취약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위치로 인하여 결혼이주자는 가정 폭력 피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결혼이주자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주자들이 스스로의 피해를 소리내어 바깥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정내 위계적인 권력 관계를 걷어내어 가족 내 갈등을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토론 3

피해자 안전확보 제도 현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정책 현황-

박동혁

여성부 인권보호과

I. 들어가며

지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가정사’ 정도로 소홀히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국가의 사법체계와 사회공동체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도록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법이 시행(1998. 7. 1)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정의 해체를 위협하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

그동안 여성부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오늘 토론은 여성부에서 추진 중인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향후 여성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II.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현황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긴급 전화서비스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운영주체 | | | 종사자수 | | |
|------|------|-----|------|-----|------|
| 합계 | 위탁 | 직영 | 합계 | 대표 | 상담원 |
| 16개소 | 12개소 | 4개소 | 146명 | 16명 | 130명 |

※ 직영 : 부산, 대구, 광주, 충북

- 시·도(전화권역)별 16개소에 대하여 위탁 12개소, 직영 4개소를 설치·운영
 - 2인 3조, 24시간 Hot-Line 운영
 - 긴급보호 조치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정보교류 및 지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등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당했을 때 365일 24시간 긴급 지원하고, 경찰, 병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 '06. 11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8개 국어 상담 지원(전화 및 인터넷)
- 종사자는 총 24명으로, 센터장 외 베트남, 중국 등 7개국 이주여성 18명으로 구성된 상담원이 있음
- ※ 중국, 태국, 캄보디아 상담원 추가 채용 예정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상담, 의료·수사·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연계 지원
- 통합상담소를 포함하여 300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장애인 1개소), 72개소의 보호시설
- ※ 단기 59, 장기 5, 장애인 1, 외국인 7
- 1,100여명의 상담원,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 근무하면서, 연 30만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음.

□ 피해자 치료보호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 간의 협약 체결('05. 1월)
 -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

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 '05. 8월 개소된 서울 경찰병원의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국 15개소에 설치
- 상담, 의료, 법률·수사서비스를 통합 지원
 - 시도, 지방경찰청, 병원간 3자 협약

□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및 아동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폭력·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에서 운영

※ 법률구조 대상에 남아를 포함하고, 직업훈련비 지원기간을 보호시설 퇴소 후 6개월까지 연장('08. 2월)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을 복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권기금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외계층에 포함

- '04년 8월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심리안정 및 치료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직업훈련 실시
-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그룹홈)

- 대한주택공사 매입주택 중 일부를 별도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에 필요한 임대료와 사업운영비를 국비 지원
- 공급 물량 : '08년 21호(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 서울 9호, 부산 12호 시범 실시 중

※ 운영기관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군·구청,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군·구에 소재하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보호시설

Ⅲ. 관련기관·시설간 지원 연계체제

긴급보호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상담소 · 보호시설

- 가정폭력 관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시설 보호
- 의료, 수사, 법률 연계지원 등

□ 의료기관

- 가정폭력 발견 시 신고,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피해자 관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진단서 발급

□ 교육기관

-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발견 시 신고, 피해자 가정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자료 제공,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협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피해자 동반자녀에 대한 취학(입학, 전학 등) 지원(비밀전학)

□ 법률구조기관

-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자 법률적 보호 및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 법률상담, 자문 등

□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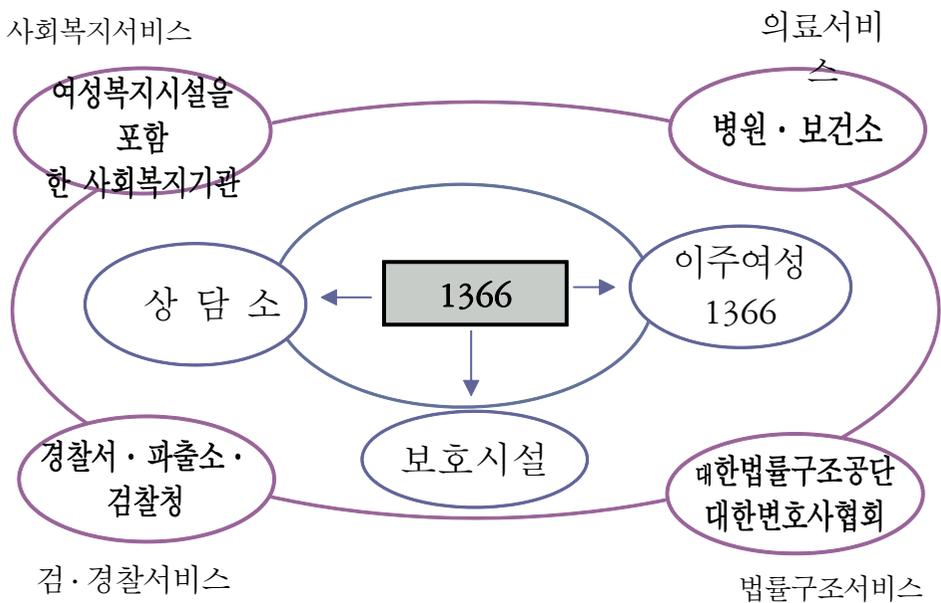
- 피해자 및 보호아동의 격리보호 의뢰,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협조

-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운영지원

□ 사법기관

- 폭력사태 접수 및 수사
-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 조사시 동행 협조
- 격리보호, 치료 등이 필요한 보호조치 제공, 형사재판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IV. 향후 추진방향

- 그동안 여성폭력 방지관련 제도의 도입과 각종 사업의 개발 및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다면, 앞으로는 도입된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고 각종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가정폭력 대응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 기관 및 시설간 협조 연계체계, 시설평가와 국비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 상담원 교육제도 개편 등에 대해 검토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연구·검토 중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담원 교육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양성·보수교육 표준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능력 향상을 꾀하고자 함.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피해자 보호, 비밀보장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조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통역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보호·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상담소·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인건비 등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가정폭력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임.

● 토론 4

피해자 안전권리 확보를 위한 연계망 구축

황정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전’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함. 여기에 비추보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권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염려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하면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다시는 가정폭력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상황으로부터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벗어나서 자립생활을 도모하기까지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함.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연계망 구축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개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는 폭력피해여성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각각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복합적인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도록 해야함.
-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피해여성들이 폭력상황의 지속, 중단을 선택할 때는 ‘내가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고 함. 그래서 대안적인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직면하게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효과적인 외부지원 여부가 폭력상황의 종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함(장희숙 외, 2001). 이는 가정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폭력피해여성으로 하여금 폭력상황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실제 각 서비스 기관들간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관련기관들간의 연계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 대 기관간의 공식적 연계망 보다는 운영위원 등의 개별적 연결망을 구축해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 지역에 따라, 시설장 등의 개인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관련 기관들간의 연계망 구축정도에 편차가 있고
- 보호시설이나 상담소간에는 연계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검경찰, 의료기관, 법원 등과의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여성폭력방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회의를 개최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계 활성화와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한 경찰, 검찰 등의 관계자는 참석율이 낮은 등 실효성이 낮으며, 최근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로 전환된 이후에는 더욱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 개별기관에서 관련 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을 시도하려고 해도 잘 이뤄지지 않으며
-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지원과정에서의 변화가 체감되지 않으며
- 경찰은 보다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긴 이후로 원스톱지원센터로 사건을 이관해서 상담소, 보호시설 등과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었고
-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력도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었고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 피해여성이 지구대에서 1366으로 경찰 동행없이 혼자 이동하다가 가해자를 만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연계망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기관들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구축되었을 뿐 혹은 필요성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

- 그러다 보니 담당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비공식적 인맥 등에 의존해서 제한적으로 연계가 이뤄지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양에 격차가 발생할 소지도 있음.

- 또한 경찰, 검찰,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은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 개인적인 수준에서 연계가 이뤄질 경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연계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함.

- 이렇게 볼 때 관련기관간 연계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계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함.

○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 먼저 관련기관들간에 상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함.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기관들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갖는 기회가 있어야 함. 또한 연계망에 속한 각 기관들이 전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각각의 기관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고유의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각의 서비스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연계망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지 연계를 한다고해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셋째, 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도 광역과 기초단위로 구분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야함.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부처차원에서, 광역에서는 관련 기관차원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연계망 활성화를 정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루고, 기초단위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기초단위의 경우 일을 같이 해가는 파트너들간에 이뤄지는 업무 조율, 고충 해소 등이 이뤄지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연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연계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과정별, 단계별 어떠한 안전 이슈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현행 시스템이 연계망 구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분석하고, 새롭게 구축해야할 연계체계를 파악하는 등 안전권 보장을 위한 연계망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오늘의 자리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안전권에 대한 분야별 논의가 이뤄졌는데 오늘을 토대로 이후엔 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봄.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권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실상은 어떻게,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권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논의와 전반적인 실태가 파악되는 것이 필요함.

●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별첨 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김 은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사회학 Ph. D

-가정폭력 추방정책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2006) 중에서-

■ **별첨:** 가정폭력 추방정책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2006)에서 수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김 은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사회학 Ph. D.

I. 들어가는 말

가정폭력은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의 불화나 갈등이 아닌 가장 치명적인 높은 위험을 나타내는 심각한 범죄이다.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생명박탈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해간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피살된 여성의 1/3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 피살율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전체 살인사건의 1/5이 바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1990년-2002년 13년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분석해 보면, 살해당한 여성의 21.2%가 자신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고, 내연이나 동거관계에서의 피해당한 경우(25.2%)까지 포함하면, 살해된 여성피해자의 46.4%는 자신의 남성파트너로부터 죽음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행·학대가 유지되었던 경우는 배우자 관계의 경우 72.7%이고, 내연·동거관계인 경우 53.6%였다고 한다. 반면, 살해된 남성 중 약 16%가 자신의 배우자나 이성파트너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남성의 폭행·학대에 대한 '대항적 반응'으로 살해한 사건은 무려 35%나 되었다.²¹⁾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을 방치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심각성을 매우 상징적으로 시사하며, 효과적 위기개입 및 적극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1)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살인범죄실태에 관한 연구(박형민, 2003)]의 기초조사 데이터를 입수, 필자가 원천자료의 재가공 및 재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이 기초조사 데이터는 전국의 주요 검찰청별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3년동안 발생한 살인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기록 전체리스트를 통계적으로 임의표집한 397건을 내용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와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다.²²⁾ 각국의 가정폭력 정책수립의 최우선적 관심사는 바로 '피해자의 안전'이며, 최우선적 과제는 폭행시점으로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간 전체를 통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피해자 안전과 지원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사건의 접수시점으로부터 소송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지원·보호연속체(a continuum of supports and protection for victims)를 구성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Quincy 보호관찰소장 Andrew Klein이 강조하고 있듯이, 모든 개입전략은 프로그램 동안(많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행위를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가해자 개입은 처우방법(treatment)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안전 프로그램(public safety program)이다. 따라서 피해자 안전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Healey et al.,1998:10)고 주장한다. 최근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사건 형사실무규약에 강조된 내용을 보면, (1)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마치 살인사건 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2) 경찰 및 검찰은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위협을 예방하고 안전계획을 세워야 하는 책무를 지니며, (3) 가해자 개입과 처우 전략 기획함에 있어서,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위 "치명성평가(lethality assessment)" 또는 "위험조사"를 반드시 시행, 판사와 배심원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²³⁾

과연, 우리나라의 입법 시스템은 어떠한가? 1998년 7월 가정폭력관련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법 시행이전에 비해 가정폭력의 신고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관련법이 실제로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별 피해자들의 운명은 가해자의 기소나 처벌에 의해 개선될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위

22) 미국이나 영국 등의 기소를 위한 수사실무규약(protocol)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마치 살인사건 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23) 이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김은경, 2003)]을 참조하기 바람.

반과는 별도로 법적 소송과정 그 자체는 ‘이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을 가져올 수 있다(Adler, 1987). 이러한 경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잘 알고, 증언에 대한 위협가능성이 있는 범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Cretney & Davis, 1995; Morgan and Newburn, 1997).

물론 현행 특례법상에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몇 가지 보호 장치가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건전한 가정육성”을 목표로 한 개입방향, 그 논리적 결과로서 높은 기소유예율 및 불처분을, 그리고 단순한 보호사건화 전략은 결국 가정폭력의 고위험 집단의 신변안전과 피해구제 문제를 여전히 방치시키고, 폭력재발 억제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김은경, 2001).²⁴⁾ 최근 가정폭력 대응정책 및 실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2003년 6월부터 최초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한 이래 2006년 현재 20개 검찰청 확대실시하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재범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처럼 가정폭력범죄를 다루는 이원적 패러다임, 즉 처벌특례법과 피해자보호·방지법의 이원화, 그리고 이원적 입법구조(형사소송절차와 가정보호절차의 이원화)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않은 채, 새로운 다이버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실제 재발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이원적 개입구조와 패러다임의 가장 큰 한계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지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

24)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김은경, 2001)]에 따르면, (1)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점은 특례법의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가 피해자 안전 및 보호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재적 모순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입법적 미비와 제도적 불비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부과되는 실정이다. (2) 수사 및 조사심리의 문제점으로서 ① 가정폭력의 특수성(Stalking, 장기지속성 및 폐쇄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방식(당해 사건중심의 수사), ② 전문조사관의 부재, 위험성 평가(lethality assessment) 등 기초적 조사활동의 미흡, 더 나아가 ③ ‘검사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특례법 제9조)’간의 딜레마로 인하여 사건처리 및 처우선택의 적절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의문의 여지가 많은 ‘피해자 의사존중(“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혼인지속 의사여부’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이원적으로 분류·처리하는 방식은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안전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이유는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1) 하나는 가정폭력관련법이 처벌특례법과 피해자 보호 및 방지법으로 이원화되고, 소관부처의 행정기능과 업무성격에 따라 입법목표가 재해석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해방식이 상이하여, 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문제가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무관행을 보면, “피해자 안전보호” 문제는 특례법상에서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가해자 성행교정 및 처우를 통하여 상징적·간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썸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한편, 방지법상의 피해자 보호정책은 소송절차(특례법)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2)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왜 형사처벌을 기피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탐색하지 않는 채, ‘가정의 보호’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혼의사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로 구분하는 처리 관행은 한편으론 가정폭력을 일반폭력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형법체계의 경직성을 그대로 잔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론 형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위 “치료적 다이버전”(상담, 치료,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의존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패러다임 속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및 피해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왜곡되거나 사라져 버린다.

여기에서는 법 시행이후 최근 8년간의 형사법적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피해자 안전보호의 관점에서 개관해보고,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재폭력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개입의 원칙과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입과 같은 실무적 정책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각각이 과연 전체 가정폭력방지정책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 보다는 전반적인 대응추세 변화와 더불어 피해자의 욕구와 이해를 중심으로, 소송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형사실무적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현황과 쟁점들

1.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및 피해자 지원실태

2004년 여성부의 전국 가정폭력발생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생한 배우자 폭력발생율(정신적·신체적 및 성적 폭력 포함)은 44.6%이었고, 신체적 폭력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경미한 신체적 폭력은 15.2%, 심각한 신체폭력은 4.8%로서 전체적으로 15.7%의 폭력 발생율을 나타내었다(여성가족부 정책보고서, 2005).²⁵⁾ 통계청의 인구센서스(2005)에 의거, 유배우자인구(22,501,167명)를 대략 1,120만쌍의 부부로 환산할 때, 2004년 한해동안 1회 이상의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부부는 적어도 전국에 537,000쌍이었고, 경미한 신체폭력을 경험한 부부까지 합치면, 약 1,792,000쌍이나 된다.

<표 1> 2004년 한국 가정폭력 발생실태

| | 결혼이후현재까지 | | 지난 1년간(2004) | | | | | |
|------------|-----------|--------|--------------|--------|-------|-------|-------|--------|
| | 총 폭력발생율 | 신체적 폭력 | 총 폭력발생율 | 신체적 폭력 | | | 성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 | | | | 전체 | 경미폭력 | 심한폭력 | | |
| 배우자에 대한 폭력 | 53.6% | 24.1% | 44.6% | 15.7% | 15.2% | 4.8% | 7.1% | 42.1% |
| | 아내에 대한 폭력 | | 37.3% | 13.2% | 12.6% | 3.9% | 6.4% | 34.1% |
| | 남편에 대한 폭력 | | 32.6% | 8.5% | 8.1% | 2.1% | 1.8% | 31.2% |
| 아동폭력 | | | 52.4% | 38.6% | 38.2% | 11.0% | - | 45.2% |

가정폭력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대체로 아내구타가 행해지는 가정에서는 자

25) 이와 같은 수치는 기존의 실태조사 연구들이 30% 이상의 폭력발생율(심각한 신체폭력 최소 8%이상)을 보고한데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 이는 조사방법론 및 표본추출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최근 가정폭력 발생율이 줄어들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녀에 대한 학대도 동시에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체벌(심한 폭력) 또한 최소 11%나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피해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²⁶⁾

이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을 2004년도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1366 긴급전화는 전체상담(154,669건)중 가정폭력사안 41,208(26.6%)건에 대해 상담 조치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전체(193,419건) 중 46.5%(90,487건)인 가정폭력 사안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상담지원 건수만을 가지고 볼 때, 결과적으로 심각한 폭력사건의 24.5%, 전체 신체폭력(경미 포함) 발생건수의 약 7.3%에 대해 대응한 셈이다.²⁷⁾ 한편, 2004년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내용을 보면, 주로 피해자의 심리·정서지원이 약 6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률상담(27.7%)을 포함한 법적 소송지원이 30.8%,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지원 등 의료지원이 1.8%, 시설입소연계가 3% 등으로 나타난다.

<표 2> 한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

| | 가정폭력 상담소 | | | | 보호시설 | | |
|------|----------|-------|---------|----------------|------|-------|--------|
| | 개소 수 | 상담원 수 | 전체상담실 적 | 가정폭력 상담건수 | 개소 수 | 상근자 수 | 입소 여성수 |
| 2002 | 159 | 382 | 177,413 | 91,391(55.1%) | | | 2,214명 |
| 2003 | 177 | 398 | 195,286 | 99,376(50.9%) | 38 | 104 | 2,613명 |
| 2004 | 182 | 398 | 193,439 | 90,489(46.8%) | 48 | 122 | 2,747명 |
| 2005 | 297 | 675 | 226,601 | 111,191(49.1%) | 57 | 155 | 2,739명 |

26) 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아내구타의 심각성 정도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하는 학대의 정도와 관계가 있으며, 남편이 가장장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가정일수록 아들이 학대받을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Bowker, Arbitell & McFerron, 1988; Hughes, 1988).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가정폭력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가정의 중복구타의 발생율을 추적한 결과, 사례의 62.4%에서 중복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김은경, 2002). 가정폭력의 중층성을 감안할 때, 아내구타나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는 또 다른 유형의 학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학대의 중복성을 발견하려는 실천과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27)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간의 연계 및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보면, 심각한 폭력의 16.5%, 전체 신체폭력사건의 5.0% 만을 지원하였다고 추정된다.

● 자료 : 2005년도 가정폭력·성폭력 관련기관 운영실적(여성가족부)

한편, 2004년 기준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 수는 총 2,747명이다. 보호 시설 입소경로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의한 경우가 24.6%, 1366을 통한 경우가 27.8%, 본인 스스로가 19.3%, 경찰에 의한 경우가 9.9%, 사회단체(복지시설)에 의한 경우가 4.1% 등이다. 지원내용은 주로 심리·정서지원이 62.1%, 수사·법적 지원이 3.6%, 의료지원이 13.5%, 자립지원이 5.4%, 동반아동지원이 13.3%, 가해자 지원이 2.1% 등이다.

이에 비해 형사법적 개입 서비스를 보면, 2004년 한해 동안 경찰 및 검찰에서 처리된 사건 수는 17,294건(범죄백서, 2004)으로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폭력사건의 3.2%, 그리고 경미한 폭력사건을 포함한 전체 신체폭력 발생건수의 약 1.0%만이 다루어진 셈이다. 전반적인 실제 발생율에 비해 국가의 공적인 위기개입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2. 형사법적 대응실태에 나타난 피해자 보호의 문제

(1) 경찰단계

1998년 법 시행 이래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발생추이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2003년까지 사건접수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4년부터는 15%이상씩 격감 추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가 실제 발생율의 감소인지 아니면, 형사사법적 대응의 실패와 불신으로 인한 신고율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요구된다.

<표 3> 가정폭력 사건발생 및 조치상황

| 연 도 | 발생건수 | | 검거인원 | 조 치 | | |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 |
|------------------|--------|-----------------|-------------------|---------------|------------------|------------|------------------|-------|
| | 사례 | 전년대 비 증감율 | | 구속 | 불구속 | 기타 (계도) | 건수 (송치율) | 인 원 |
| 1998년 7.~12.. | 3,687 | - | 4,002(100.0) | 498 (12.4) | 3,491 (87.2) | 13(0.3) | 89 (2.4%) | 97 |
| 1999년 | 11,850 | 60.0 | 12,719 (100.0) | 868(6.8) | 11,804 (92.8) | 47(0.4) | 990 (8.4%) | 1,031 |
| 2000년 | 12,983 | 9.6 | 14,105 (100.0) | 678(4.8) | 13,380 (94.9) | 47(0.3) | 3,813 (29.4%) | 4,040 |
| 2001년 | 14,585 | 12.3 | 15,557 (100.0) | 691(4.5) | 14,760 (94.9) | 106(0.7) | 4,559 (31.3%) | 4,818 |
| 2002년 | 15,151 | 3.9 | 16,324 (100.0) | 586(3.6) | 15,127 (92.7) | 611(3.7) | 3,702 (24.4%) | 4,083 |
| 2003년 | 16,408 | 8.3 | 17,770 (100.0) | 496(2.8) | 16,787 (94.5) | 487(2.7) | 4,186 (25.5%) | 4,459 |
| 2004년 | 13,770 | -16.1 | 15,208 (100.0) | 329(2.2) | 13,969 (91.6) | 910(6.0) | 2,587 (18.8%) | 2,616 |
| 2005년 | 11,595 | -15.7 | 12,775 (100.0) | 181(1.4) | 11,800 (92.4) | 794(6.2) | 1,881 (16.2%) | 2,022 |

● 자료제공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율은 1999년 6.8%를 정점으로 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1.4%에 불과하다. 특례법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1998년 시행초기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조치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12.4%였지만 이후 구속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구속여부는 피해자와의 격리에 연관된 사안이므로, 구속율의 저하는 결국 “피해자 신변위협 및 재발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의 보고율이 높아진 데 기인한 상대적인 저하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구속수치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송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변안전과 보호 노력이 미흡함을 반증한다.

한편, 경찰에서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율도 2001년에 31.3%로 가장 높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전체사건의 약 16.2%로 낮아졌다. 가정보호사건 송치의견율이 점차 낮아졌다는 것은 경찰수사당시 피해자들이 이혼의사를

밝히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가정폭력 사건이 진행될 경우, 특례법상의 임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재폭력 위험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과연, 최근 가정폭력사건들이 이전에 비해 경미하였을까? <표 4>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결코 경미한 사안의 증가로 추정되기 어렵다. 특히 최근 3년간 오히려 가정폭력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재범율이 다소 늘어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구속율 및 보호사건 송치의견율의 저하는 결국 피해자 안전보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재범자 비율증가는 현행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의문케 한다. 사실상 최근 신고율의 저하는 기존 형사사법적 대응의 실패와 불신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피적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요구된다.

<표 4>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의 폭력유형 및 재범현황

| | 계 | 폭력수단 | | | | | 재범별 | | | |
|------|-------|-----------------|---------------|-------------|--------------|--------------|------------------|---------------|--------------|--------------|
| | | 단순폭력 | 도구폭력 | 감금 | 협박모욕 | 재물손괴 | 전과없음 | 1범 | 2범 | 3범이상 |
| 2003 | 17770 | 15004 (84.4) | 1766 (9.9) | 24 (0.1) | 250 (1.4) | 726 (4.1) | 16479 (93.1) | 1000 (5.6) | 207 (1.2) | 84 (0.5) |
| 2004 | 15208 | 12909 (84.9) | 1251 (8.2) | 41 (0.3) | 336 (2.6) | 671 (4.4) | 14,023 (92.2) | 871 (5.7) | 175 (1.2) | 139 (0.9) |
| 2005 | 12775 | 10817 (84.6) | 1115 (8.7) | 14 (0.1) | 160 (1.3) | 669 (5.2) | 11568 (90.1) | 798 (6.2) | 251 (2.0) | 158 (1.2) |

● 자료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주요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이나 법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대체로 한시적 또는 장기적 격리를 원한다고 한다. 더욱이 경찰 신고이후 전형적으로 11일 이내에 가정폭력의 재발위험은 전형적으로 높아진다. 가정폭력에 대한 외부중재 또는 법적 개입이 시작될 때, 피해자 안전의 위험성은 극단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실무규약에서는 형사법적 개입이 시작될 때, 최우선적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발위험의

제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일정한 "격리"는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행법상 응급조치나 임시조치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장치이다. <표 5>에 따르면, 최근 경찰의 현장출동시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 시설로 연계하는 조치를 위한 비율이 2005년 14%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 보호지원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즉 과거에 비해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가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기능적으로 강화시키려는 각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료기관 연계비율은 그다지 크게 발전 되지는 않았다.

<표 5> 경찰단계의 응급·임시조치 활용현황

| 구 분 | 응 급 조 치 (현장출동시) | | | | 임 시 조 치 | | | |
|------------|-----------------|-------------|-----------|----------|------------|-----------|----------|----------|
| | 상담소·보호시설인도(울) | | 의료기관인도(울) | | 신청(울) | | 집행(울) | |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1998(7-12) | 31(0.8) | 31(0.8) | 69(1.9) | 69(1.7) | 93(2.7) | 93(2.3) | 58(1.6) | 58(1.4) |
| 1999 | 9(0.1) | 10(0.1) | 207(1.7) | 209(1.6) | 549(4.6) | 550(4.3) | 421(3.6) | 419(3.3) |
| 2000 | 56(0.4) | 56(0.4) | 534(4.1) | 545(3.9) | 961(7.4) | 963(6.8) | 715(5.5) | 717(5.1) |
| 2001 | 533(3.7) | 541(3.5) | 989(6.8) | 997(6.4) | 1259(8.6) | 1261(8.1) | 942(6.5) | 945(6.1) |
| 2002 | 714(4.7) | 718(4.4) | 887(5.9) | 899(5.5) | 993(6.6) | 1021(6.3) | 832(5.5) | 852(5.2) |
| 2003 | 819(5.0) | 802(4.5) | 901(5.5) | 915(5.1) | 1,140(6.9) | 1144(6.4) | 829(5.1) | 837(4.7) |
| 2004 | 894(6.5) | 925(6.1) | 688(5.0) | 702(4.6) | 656(4.8) | 658(4.3) | 359(2.6) | 360(2.4) |
| 2005 | 1,589(13.7) | 1,703(13.3) | 631(5.4) | 641(5.0) | 451(3.9) | 447(3.5) | 234(2.0) | 233(1.8) |

한편, 경찰단계의 초기 임시조치(주거지로부터의 퇴거·격리, 100미터이내 접근 금지)는 사건접수단계에서 재폭력 위험에 놓인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적 제도이다. 따라서 구속율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임시조치 신청율이 증가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임시조치 신청

을 역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05년에 전체사건의 4%선에 머물고 있어, 실제 경찰초기대응에서 피해자와의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은 매우 급격하게 낮아졌음을 할 수 있다. 경찰의 초기대응의 부적절성 및 피해자 보호미흡에 대한 지속적 비판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가정폭력의 형사사법적 개입방향은 가정해체 방지에 초점을 두면서, 피해자 보호수준이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검찰단계

현행법상 검찰은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지난 8년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전반적인 추세를 요약해 보면, 초기에 20%를 넘던 기소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약 14%에 머물고 있고, 특히 구공판율은 최근 2%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불기소율은 초기 20-3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55%나 되고 있다. 불기소율의 급증을 가져온 것은 2002년 이후 “공소권 없음” 결정의 급증(25-28%내외)에 기인한다. 한편,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초기 2001년까지는 전체사건의 38%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실태는 현행 통계분류 방식에서는 독자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기소유예”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시된 2003년 이후 “기소유예율”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실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율의 증가율에 기인한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과연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이 기존에 기소유예되거나 불처분될 사안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까지 선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처리지침상 대상사건의 부적절성(상습범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과 가정보호 중심의 실무관행을 고려할 때, 특히 2003년을 기점으로 한 기소율 및 보호사건송치율의 하락, 그리고 임시조치집행율의 급감현상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시행되는 상

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리절차는 기소유예의 일반이론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결정의 임상적 및 법률적 근거가 되어야 하는 “위험성 평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피해자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방식으로 시행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표 6> 가정폭력 사건발생 및 처분실태

| 연도 | 총접수 인원 | 기소 | | | 가정보 호 사건송 치 (율) | 불기소 | | | 소년 부 송치 | 타관 이송 | 미제 기타 |
|----------------|-------------------|----------------|----------------|----------------|-----------------------------|-----------------|-----------------|----------------|---------------|-------------|----------|
| | | 계 (기소율) | 구공 판 (율) | 구약 식 (율) | | 계 (불기소 율) | 기소 유예 (율) | 기타 (율) | | | |
| 1998 (7-12) | 1455 (100.0) | 462 (31.8) | 205 (14.1) | 257 (17.7) | 495 (34.0) | 380 (26.1) | 320 (22.0) | 60 (4.1) | 11 | 6 | 55 |
| 1999 | 9210 (100.0) | 2037 (22.1) | 524 (5.7) | 1513 (16.4) | 3384 (36.7) | 3302 (35.9) | 3078 (33.4) | 224 (2.4) | 69 | 39 | 61 |
| 2000 | 13,344 (100.0) | 2494 (18.7) | 611 (4.6) | 1883 (14.1) | 4982 (37.3) | 5788 (43.4) | 4942 (37.0) | 846 (6.3) | 57 (0.4) | 23 (0.2) | 2 |
| 2001 | 17,198 (100.0) | 3475 (20.2) | 624 (3.6) | 2851 (16.6) | 6478 (37.7) | 7140 (41.5) | 5953 (34.6) | 1187 (6.9) | 69 (0.4) | 36 (0.2) | - |
| 2002 | 15,286 (100.0) | 2683 (17.6) | 561 (3.7) | 2122 (13.9) | 5019 (32.8) | 7469 (48.8) | 3547 (23.2) | 3922 (25.6) | 81 (0.5) | 33 (0.2) | 1 |
| 2003 | 18,942 (100.0) | 2807 (14.9) | 658 (3.5) | 2149 (11.4) | 5907 (31.2) | 10124 (52.4) | 5305 (28.0) | 4819 (24.4) | 58 (0.3) | 45 (0.2) | 1 |
| 2004 | 17,294 (100.0) | 2429 (14.1) | 463 (2.7) | 1966 (11.4) | 5218 (30.2) | 9543 (55.3) | 4756 (27.5) | 4787 (27.7) | 72 (0.4) | 32 (0.2) | - |
| 2005 | 15,498 (100.0) | 2161 (13.9) | 361 (2.3) | 1800 (11.6) | 4475 (28.9) | 8802 (56.8) | 4368 (28.2) | 4434 (28.6) | 36 (0.2) | 24 (0.2) | - |

● 자료제공 :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3) 법원단계

현재 형사기소된 가정폭력 사건들(15-30%내외)에 대한 처리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는 없다. 여기에서는 보호절차(30%내외)로 처리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추세의 특징을 요

약하면, (1) 전반적으로 4-50%에 이르는 높은 불처분율, (2) 최근 임시조치 인용율이 25%내외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임시조치 활용도의 미약, (3) 조서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 규정의 사문화, (4) 처분선택의 어려움과 실제 적용 가능한 처우방법의 제한성(시행초기부터 사문화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감호위탁” 처분 및 “치료위탁” 처분은 시행이후 8년이 지났지만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5)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집행 감독부실 등이 두드러져 현행 처우선택 및 집행과정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법원의 결정은 가해자 보호목적(상담·교육·치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목적(접근행위제한 처분율의 저하)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최근 “기타” 범주처리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보호처분 취소후 검찰송치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 연도 | 합계 | 보호처분 | | | | | | | | | | | 불처분 | 타법 이송 | 보호 처분 취소 후 검찰 청 송치 | 기타 |
|------|------------------|-----------------|----------------|----------------|-----------------|---------------|------------|------------|--------------|--------------|---------------|--------------|-----------------|------------|--------------------------------------|---------------|
| | | 계 | 접근 행위 제한 | 친권 행사 제한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 관찰 | 감호 위탁 | 치료 위탁 | 상담 위탁 | 1,4호 병과 | 3,4호 병과 | 기타 | | | | |
| 1998 | 235 (100.0) | 178 (75.7) | 54 (23.0) | 1 (0.4) | 45 (19.1) | 56 (23.8) | - | 1 (0.4) | 21 (8.9) | | | | 55 (23.4) | 1 (0.4) | 1 (0.4) | - |
| 1999 | 2,552 (100.0) | 1,448 (56.7) | 324 (12.7) | 17 (0.7) | 404 (15.8) | 593 (23.2) | 6 (0.2) | 3 (0.1) | 101 (4.0) | | | | 1,071 (42.0) | 7 (0.3) | 21 (0.8) | 5 (0.2) |
| 2000 | 4,619 (100.0) | 2,695 (58.3) | 548 (11.9) | 3 (0.1) | 1,017 (22.0) | 839 (18.2) | 2 (0.0) | 1 (0.0) | 285 (6.2) | | | | 1,794 (38.8) | 8 (0.2) | 88 (1.9) | 34 (0.7) |
| 2001 | 5,602 (100.0) | 2,725 (48.6) | 334 (6.0) | - | 278 (5.0) | 754 (13.5) | - | 1 (0.0) | 348 (6.2) | 117 (2.1) | 748 (13.4) | 145 (2.6) | 2,371 (42.3) | 8 (0.1) | 기타 병합 | 498 (8.9) |
| 2002 | 6,203 (100.0) | 2,647 (42.7) | 161 (2.6) | - | 479 (7.7) | 432 (7.0) | - | 1 (0.0) | 448 (7.2) | 59 (1.0) | 893 (14.4) | 174 (2.8) | 3,257 (52.3) | 7 (0.1) | 기타 병합 | 292 (4.7) |
| 2003 | 5,551 (100.0) | 2,576 (46.4) | 241 (4.3) | 5 (0.1) | 657 (11.8) | 450 (8.1) | - | 1 (0.0) | 332 (6.0) | 80 (1.4) | 647 (11.7) | 163 (2.9) | 2,371 (42.7) | 1 (0.0) | 기타 병합 | 603 (10.9) |
| 2004 | 5,852 (100.0) | 2,732 (46.7) | 205 (3.5) | 2 (0.03) | 233 (5.7) | 666 (11.4) | 4 (0.1) | 3 (0.1) | 482 (8.2) | 138 (2.3) | 673 (11.5) | 226 (3.9) | 2,498 (42.7) | 7 (0.1) | 기타 병합 | 615 (10.5) |

● 자료 : 사법연감(1999-2005)

물론 높은 불처분율만을 가지고 법원이 “특례법의 실효성을 낮춘다”고 문제삼을 수는 없을지 모른다. 가정폭력의 역동성 때문에 경직된 형사처벌 대신 다양한 전환처우(diversion)방안이 더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의사선택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도 부족하고, 가해자의 교정가능성 및 재범위험성 등 적절한 처우선택을 위한 기초조사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해사건”만을 중심으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불기소율의 증가와 및 불처분율의 상승 추세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많은 가정폭력이 폭력수준이나 피해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단순히 이혼이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관계로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중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 안전과 보호문제’가 시급한 경우가 많다. 실제 낮은 임시조치율은 소송과정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영향력하에 놓아둠으로서 “진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강제상황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위험성평가와 같은 구체적 절차과정을 제도화하고,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자 일시보호시설 등 제도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4) 보호처분단계 :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법 시행이후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관련처분 실시현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가정폭력사범의 연도별 보호처분 실시현황

| | 계 | 보호관찰 | 증감율 | 사회봉사 | | | | 수강명령 | | | |
|------|------|----------------|-----------|---------------|------|-------|---------------|---------------|------|-------|---------------|
| | | | | 계 | 증감율 | 보호관찰부 | 단독 | 계 | 증감율 | 보호관찰부 | 단독 |
| 1998 | 102 | 82 (80.3) | - | 50(49.0) | - | 34 | 16(15.7) | 12(11.8) | - | 8 | 4(3.9) |
| 1999 | 1001 | 846 (84.5) | 10.3 1 | 339 (33.9) | 6.78 | 185 | 154 (15.4) | 154 (15.4) | 12.8 | 53 | 101 (10.1) |
| 2000 | 2143 | 1699 (79.3) | 2.00 | 471 (22.0) | 1.39 | 332 | 139(6.5) | 637 (29.7) | 4.14 | 332 | 305 (14.2) |
| 2001 | 3099 | 2458 (79.3) | 1.45 | 859 (27.7) | 1.82 | 651 | 432 (13.9) | 601 (19.4) | 0.94 | 392 | 209 (6.7) |
| 2002 | 2945 | 2363 (80.2) | 0.96 | 813 (27.6) | 0.95 | 570 | 243(8.3) | 880 (29.9) | 1.46 | 541 | 339 (11.5) |
| 2003 | 3006 | 2464 (81.2) | 1.04 | 907 (30.2) | 1.12 | 640 | 267(8.9) | 843 (28.0) | 0.96 | 568 | 275(9.1) |
| 2004 | 3183 | 2706 (85.0) | 1.10 | 617 (19.4) | 0.68 | 455 | 162(5.1) | 982 (30.9) | 1.16 | 667 | 315(9.9) |

★ 자료 : 보호관찰통계연보(2000-2005)

연도별로 다소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호관찰 실시대상자 비율이 80-85%선이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거나, 단독으로 처분을 받은 자들의 비율은 30%내외를 구성하고 있다. 법시행 초기에는 사회봉사명령 단독처분자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최근에 들면서, 수강명령처분자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음 <표 9>와 <표 10>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표 9>에 따르면, 해가 거듭될수록 가정폭력행위자 중 처분경력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표 10>은 보다 특징적인 사실을 보여주는데, 사법적 감독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에도 가정폭력이 재발생되는율이 점차 늘고 있고, 성적불량자율이 최근 18%에 이르는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보호처분변경, 가정보호 등 취소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가 직접적으로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검증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처분결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보호처분을 통한 재범억제력 및 위하력은 결국 피해자의 재폭력 위험을 낮추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가해자 처분기간 중에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 및 사법모니터링 시스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9> 보호관찰 가정폭력사범의 보호관찰경력

| | 계 | 없음 | 1회 | 2회 | 3회 | 4회이상 |
|------|------|------------|----------|---------|--------|--------|
| 2002 | 2155 | 1986(92.3) | 154(7.1) | 15(0.7) | - | - |
| 2003 | 1999 | 1855(92.8) | 126(6.3) | 12(0.6) | 3(0.2) | 3(0.2) |
| 2004 | 2203 | 1977(89.7) | 178(8.1) | 37(1.9) | 7(0.3) | 4(0.2) |

<표 10>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율 및 성적불량자 조치현황

| |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율 | 개청이후 재범율 | 기간중 관찰대상자 | 계 | 경고 | 구인 | 긴급 구인 | 유치 | 보호 처분 변경 | 기간 연장 | 가정 보호 등 취 소 |
|------|----------------------|----------------------|--------------|---------------|-----|----|----------|----|----------------|----------|-------------------------|
| 2002 | 0.7 (29/294 1) | 0.9 (65/710 8) | 2941 | 384 (13.1) | 375 | 4 | - | - | - | 2 | 3 |
| 2003 | 0.8 (23/302 4) | 1.0 (88/910 7) | 3024 | 285 (9.4) | 239 | 5 | 1 | | 21 | | 19 |
| 2004 | 3.0 (56/174 1) | - | 1741 | 304 (17.5) | 256 | 3 | - | - | 25 | - | 20 |

현재 보호처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유형과 보호처분 내용이 서로 조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 결과 ① ‘감호위탁처분’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습성이 강한 행위자들에게도 수강명령이나 상담명령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② 교정프로그램 역시 가해자의 문제유형별 분류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고 “모든 것에 대응하는 표준모델(one-size-fits-all)”로의 접근하는 경향, ③ 가해자들의 문제유형이나 눈높이에 맞춰있지 않아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가해자 분류처우를 보다 합리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교정가능성이 낮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기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민·형사상으로 보다 향상된 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를 개발하여야 한다.

3. 피해자 관점에서 본 형사법적 개입의 가치와 쟁점들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다른 폭력범죄와는 다르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목표가 미래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목표라면, 많은 경우 기소 전략이 아주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가 되기도 한다. 현행 법체계상 기소의 성공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지원은 가해자 처벌(기소 노력)을 위한 피해자의 헌신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이지, 미래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관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 사례에서 법적 개입이 과연 피해자를 위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쁜 것인지, 또는 무엇이 피해자 보호를 더 잘 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서구의 법률체계들은 가정폭력에 형사·민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게 위해 커다란 변화를 겪어 오고 있다. 구속·기소·처벌 등의 결정에서 피해자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피해자 선택 모델)과 피해자의 의사결정 역할을 박탈하고 형사법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강제정책(체포 우선모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최근 두 정책모델 모두 피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문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피해자 선택모델’은 결국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이 체포나 기소를 시도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체포우선 모델’은 체포(그리고 기소)가 일반적 억제력을 지닌다는 신념에서 고안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불명확하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법적 개입이 폭력의 감소나 중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연구결과들은 체포가 폭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도(Davis and Smith, 1995), 형사적 방법(Fagan et al, 1984; Ford and Regoli, 1993) 또는 금지명령과 같은 민사적 방법(Berk et al, 1983)이 폭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재범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형사절차의 작동과 더불어 피해자가 자신의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와 헌신(법률적 단계를 밟는 것까지 포함하여)이 함께 할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한다. 체포와 기소가 피해자들에게 폭력관계를 종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선 확실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활동(가령, Domestic Violence Officers System:이하 DVO)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거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안으로서, 소위 ‘피해자 권한강화 모델(Victim Empowerment Model)’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의 원칙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법률시스템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의해 덜 강제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복돋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

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하여, 실제 폭력피해 여성들이 형사법적 처벌이 폭력을 종식시키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에 있어서 주요한 장애요인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fear)이다. 이 공포심은 보복 위협에서 오기도 하고, 예전 법률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에 기인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사적 문제를 법률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것은 스스로 자기문제해결에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징적 의미의 공포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처우방식은 소위 [피해자 선택모델]에 근거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강압적 관계와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지, 기소를 유지할지 또는 포기할지 등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가 배우자의 통제행위에 얼마나 종속되고 영향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는 우리에게 사건처리과정에서의 기계적인 '피해자 의사존중'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문제를 푸는 핵심적 전략을 제시한다.

폭력을 종식하는 핵심은 바로 학대관계를 종식하는 것이며, 많은 학대받은 여성들은 배우자의 통제행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들을 위해 고립과 확산의 결여에 대한 대항적 평형조치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학대받은 여성들이 폭력종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법적 활동과정을 통해서 보면, 가정폭력전담부서 및 가정폭력전담관리(DVO)들의 활동에서 그와 같은 대항적 평형조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도움과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 가정폭력의 위기수준의 다양성 및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초기대응을 단순히 형사절차 진행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절차화하기 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및 형사법적 통합서비스의 핵심단계로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후 위기개입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폭력적 관계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가정폭력전담관리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의

경우에도 (1) 지역 단위별 경찰서내에서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반을 설립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2) 기왕의 가정복지분야의 관련공무원(또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초기 대응직 후 DVO에 의한 피해자와의 연결망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기능하며, 수사개시로부터 법원송치시까지 후속개입을 통해 피해자화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지원연속체를 구성해야 한다. DVO는 초기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사건조사와 가정폭력의 문제수위를 진단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III. 가정폭력 법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1.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고려 : “스토킹”과의 연관성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일종의 ‘성폭력’으로 인지될 만큼 ‘성에 근거한 현상(gendered phenomenon)’으로 나타나며, 낭만적 관계(romantic relationship)의 단절이란 맥락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몇몇 주요 경험적 연구들은 스토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관계이었을 때 가장 흔하여,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한다(Hall, 1998; Kienlen et al. 1997; Pathe & Mullen, 1996; Tjaden & Thoennes, 1998). 대부분의 스토킹이 개시되는 시기는 스토킹이 희망하는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관계의 청산 이후였다고 한다(Tjaden & Thoennes, 1998). 또한 Bachman과 Saltzman(1995)은 남편과 별거한 여성은 이혼한 여성의 경우보다 배우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3배 더 받았고, 결혼한 여성의 경우보다는 15배나 더 많은 스토킹 피해를 받았다고 하여, 관계단절의 시점에서 피해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토킹 발생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김은경, 2003)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들은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배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놓일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시한다. 따라서 전체 가정폭력 법률체계 및 처리시스템은 ‘스토킹’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안전보호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표 11> 2002년 실태조사에 나타난 괴롭힘 및 스토킹 피해발생율

| | 2000년 표본조사 (16세-59세 성인대상) | | | 2002년 초점집단 피해조사 | | | | |
|--------------|------------------------------|-------------|-------------|-----------------|-----|------|---------------|-------------|
| | 전체 (1200) | 남성 (593) | 여성 (607) | 대학생(554) | | | 쉽터여성 (119) | 연예인 (77) |
| | | | | 계 | 남 | 여 | | |
|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 15.8 | 10.5 | 20.9 | 15.0 | 7.6 | 22.9 | 48.7 | 27.3 |
| 최근 1년 동안 | 5.4 | 4.2 | 6.6 | 7.2 | 3.5 | 11.3 | 32.8 | 15.6 |

스토킹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추적행위나 집요한 추근거림 또는 원치 않는 접촉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 그 자체는 법률적 개입에 필요한 구성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입증하기 다소 곤란한 성격의 “비악의적 구애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들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진 행위들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만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란 보통의 사람이 공포, 놀람, 두려움, 위협, 괴롭힘 또는 성가심을 느끼도록 반복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야기하려고 의도된 일련의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이나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의 스토킹 관련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초점을 두는 내용들을 참조한다면, 법률적인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행위를 선별해 낼 수 있는데,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타인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뒤쫓고 괴롭히는가”에 있다. 따라서 특정 행위를 스토킹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²⁸⁾

28) Tjaden과 그의 동료들(2000)이 제시한 처벌 가능한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을 참조하였다.

- (1)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인 행위일 것
- (2) 원치 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일 것
- (3)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일 것

즉, 심각한 범죄로서의 스토킹(엄밀한 의미의 스토킹)은 “개별 행위유형과는 관계없이 그 집요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리적 부담이 되고 신체안전감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음 <표 12>는 심각한 범죄로서의 스토킹(엄밀한 의미의 스토킹) 피해경험자의 비율을 각 집단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심각한 범죄로서의 스토킹”은 “스토킹의 범죄구성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악성 스토킹” 피해는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다.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이 2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예인 집단이 6.5%, 대학생 집단이 1.4%를 기록하였다. 한편 악성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역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이 2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예인 집단이 2.6%, 대학생 집단이 1.3%로 나타났다.

<표 89> 엄격한 의미의 스토킹 피해 경험

| 변인 | 조사대상 | | | 유의도 |
|------------------------------------|--------------|---------------|-------------|----------------------------|
| | 대학생 (554) | 쉽터여성 (119) | 연예인 (77) | |
| 엄밀한 의미의 스토킹 피해 (3가지 구성요건 모두 충족) | 8 (1.4) | 26 (21.8) | 5 (6.5) | $\chi^2=83.02$ $p<.001$ |
| 악성 스토킹 피해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7 (1.3) | 26 (21.8) | 2 (2.6) | $\chi^2=94.13$ $p<.001$ |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스토킹’을 신체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해하는 경향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스토커가 “배우자”라는 점(친밀한 사람에 의한 것) 때문에 오히려 스토킹이라고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스토킹은 가정폭력의 연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폭력의 순환 (cycle of violence)”에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과거에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방지입법은 가정폭력특례법과 상호보완적·유기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스토킹 방지입법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보다 이른 단계에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할 각종 제도적 장치와 개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헤어진 배우자였던 경우나 가정 내에서 폭력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개입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신변안전과 보호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²⁹⁾

특히 초기 개입에서 가해자의 치명성 평가(lethality assessment) 과정을 제도화 하여, 선부른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와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필요한 것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어떠한 유형의 행위자 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질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방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이나 법원의 개입은 스토킹 행위자의 행동을 보다 폭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게 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전략 및 심도있는 정책적 지침이 요구된다.

스토킹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비형벌적 제재나 대안적인 개입수단을

29) 우리는 여기에서 1997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여성폭력방지법(Protection from Violence)의 개입모형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 집안의 열쇠를 압수하고, 가해자 남편은 의무적으로 10일간 집을 나가야 하는 접근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집을 나서게 되었지만, 법 제정 이후 가해자가 집을 나가는 형태로 정책을 전환해, ‘경기를 잘못된 사람이 경기장에서 퇴장해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증거 수집을 위한 경찰의무를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신속해지고 있다. 이 법은 EU의 중심으로 가정폭력법의 모델이 인정받고 있으며 독일 등 인근 국가에 동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2002년 독일 역시 연방 폭력보호법(Gewaltschutzgesetz)을 개정, 법에 의해 가해자가 집을 떠나고 피해 여성이 집에 계속 남아있게 되며 가해자는 접근, 접촉금지등 단계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개입조치하고 하고 있다. 가해자가 제한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발전되고 있는 '알람 시스템'³⁰⁾이나 '긴급보호명령'과 같은 제도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스토킹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peace of mind" 또는 "privacy" 등의 피해자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harassment"를 범죄로서 규정하는 추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스토킹 피해양상 및 피해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관련 법제처럼, 예방적 관점에서 경미범죄로서 규율하는 체계와 침해이익의 중대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중범죄로서 가중 처벌토록하는 이원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교정철학으로서의 "치료법리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의 이해

법 제정이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기초는 보호사건화 전략 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표준매뉴얼 개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중심의 기소-전 다이버전 전략을 가장 핵심방안으로 삼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가해자 치료교정프로그램은 미국 및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 발전한 지역사회 처우모델을 원용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처우제도"가 우리의 법체계와 형사실무관행에 맞게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표 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미의 경우, Duluth모델 및 DACC 등과 같은 다양한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출현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사법(community justice)"³¹⁾ 및 새로운 교정철학

30) 알람시스템은 가정폭력, 강간,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한 장치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존의 전화선에 연결된 장치 혹은 목걸이 등의 형태를 띤 페닉알람이 있는데, 이 경우 일단 알람이 작동하면 기록장치가 작동하고 이때 기록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법적 대응을 위한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② 999 휴대폰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집에 전화기가 없는 경우에 여성이 사용하게 된다.

31) 현재 지역사회사법 실무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만, 검사, 판사, 교정공무원들 역시 점차로 자신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에 최초로 Midtown Community Court가 설립된 이래로, 점차 지역사회 법원이 각주에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회복적 사법철학과 실천을 지역사회 사법에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사법은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목표를 좀더 폭넓은 임무(mission), 즉 범죄예방, 지역사회문제 및 갈등을 다루고, 계획 및 의사결정에 주민을 관여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재규정한다.

으로서 치료법리학(therapeutic jurisprudence)³²⁾의 등장과 연관된다. 두 가지 개념들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철학과 원리를 흡수하면서 발전하였는데, 21세기 범죄대응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사유방식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영미권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지역사회중심의 공공안전을 위한 대응체계(community justice) 속에 발전되었다. 가정폭력사건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요한 통제대상이 된다. 지역사회 사법(CJ)은 비단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약물문제, 학교폭력, 성매매,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분쟁, 소음, 쓰레기 등도 함께 다룬다. 지역사회 사법은 단순한 처벌, 형사제재 보다는 범죄자 및 피해자의 갈등 해결, 그리고 사회재통합 및 사회안전망에 초점이 있다. 사회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처우전략으로서, 치료법리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은 의료적, 치료적 관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욕구와 문제를 제기한다. 특정 범죄행위(가정폭력 및 약물중독 등)를 뿌리 깊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받은 문제로 보고, 범죄자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치료법리학은 치료적 의제로서 법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다.³³⁾ 치료법리학은 법률분석을 위해 사회과학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법학과 구분되며, 법률과 합법적 처리과정이 법적 시스템에 관여된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개인의 영향 면에서 법률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치료법리학은 법률과 합법적 처리과정이 공공정책의 합리성을 어떻게 지지하거나 또는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서구의 경우,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차지하는 형사사법체계상의 위치는 공식적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으로부터 지역사회사법(Community Justice)으로의 전환처우(diversion) 혹은 대안적 문제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32) 치료법리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이라는 용어는 1987년 David Wexler교수가 국립정신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David Wexler교수와 Bruce Winick 교수는 정신보건 법률분야는 정신보건 환자의 개인적 권리의 보호를 강조하였던 헌법적 기초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지만, 최근 그 헌법적 기초는 약해지고, 정신보건법에 불리 넣어졌던 활력도 없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인권보호와 사회적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바로 치료법리학은 그에 부응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한다(Hora et al., 1999:3-4).

33) Christopher Slobogin (1995), Therapeutic Jurisprudence ; Five Dilemmas to Ponder, 1 Psychol., Pub. Pol'Y & L. p. 196.

서 성립되었다. 사회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은 일종의 기소전(pre-charge) 또는 재판전(pre-trial) 단계의 전환처우 프로그램으로서 구성되었고, 전환처우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경찰과 검찰, 지역법원 및 정부와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 공동의 참여노력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법원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참여는 가해자 자발성을 근거로 적격자 평가과정(assessment)을 거쳐야 거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형사사법체계 내 치료법리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가고 있지만, 치료의 요구가 모든 교정상황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때론 불필요하기도 하다. 사실상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서비스가 모든 가정폭력사범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며, 해당 가해자가 지닌 문제양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확인 후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즉 객관적인 선별평가(screening & risk assessment)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회부지침(referral protocol)은 제한된 처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적절한 선별·분류처우에 선행되어야 한다. 범죄자와 적합한 치료를 연결해주는 것은 범죄자의 문제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처우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가정폭력 대응체계가 피해자 보호 및 재범억제 목표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처리과정에서 가해자의 '위험위험성' 및 '인지교정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및 보호처분결정의 적절한 실행을 위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가장 최우선적으로 소송절차상의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전환처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의 권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 가해자가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락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무죄추정 및 법원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논박할 기회를 포기해야만 한다. 결국 실제로 많은 대상자들에게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가 선택의 여지없는 압력(참여 이외에는 기소유예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강제된다고 느낀다. 따라서 공식사법체계로부터의 전

환을 위한 피의자와의 “동의 형식과 절차”를 내실있게 요건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혹은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선택”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명령 참여에 대한 동의요건과 서면화 된 형식절차를 강화하여, 피의자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해자의 사회내 처우결정은 곧 피해자 안전계획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해자의 전환위탁을 위한 적격대상자 선별기준과 치명성 평가가 형사 실무지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치료 프로그램에 적절한 대상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 ① 18세 이후 여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자, ②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이 낮은 경미폭력자, ③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태도를 보이는 자 등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집행기관(현행 보호관찰소)에서 적격자를 재사정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집단역학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효과적 교육실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동질적 집단구성이 요구된다. 전환처우 집행기관이 ‘부-적격자’를 거부할 권한이 주어지는 한에서, 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향상된 사정방법이 요구된다.

3. 성공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칙 및 개입전략

(1) 입법적 개선방향 : 향상된 보호조치

■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 최근 각국 가정폭력관련 입법동향을 보면, ‘폭력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목표로 하는 바는 피해자들의 민법적 보호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보호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유를 줌으로써, 피해자(여성)의 자유결정권을 권장한다. 진정한 ‘피해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및 지원기관간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의 장기지속적 폐쇄성 및 ‘힘과 통제의 수레바퀴’로부터 피해여성이 자유로와지기 위해서는, 외부적 지원과 상담, 피해자 권한강화 조치 등을 통해 높은 동기와 실행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피해자 권한강화 모델

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법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최근 각국의 정책 패러다임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떠나야 하고, 그 희생자가 집에 남는다”는 핵심원칙이 입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보다 정의롭다. 이제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보호처를 마련해야 했고, 동시에 친숙한 집과 환경을 포기해야 했다. 특히 아동들에게 있어서 친숙한 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은 가정폭력으로 전학을 하는 등 이차피해를 받아야만 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선택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특례법은 거처양도 및 재산양도금지규정 등의 민사상 보호명령의 연동시스템을 강화시킴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특례법은 피해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① 피해자 및 경찰에 의한 신청권, ② 재산양도금지 규정도입, ③ 거처양도 및 주거사용권의 명시, ④ 경찰에 의한 의무적 임시격리조치의 필요성, ⑤ 범죄성 괴롭힘 금지 및 친권·양육권 제한 등 임시조치 내용의 실질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경찰의 위험예방조치를 위한 실무권한 강화 : 경찰개입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격리조치이다. 현행법은 의무적 체포제도를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경찰개입시점과 임시조치(제한명령)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 안전과 보호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초기개입이 신속하고 책임있는 판단과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폭력행위와 보호명령(임시조치) 사이의 기간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가 경찰 관련법 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초기대응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경찰의 ‘퇴거명령’ 및 ‘한시적 격리조치’ 등의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량권

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가정법원과 경찰과의 규칙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접적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경찰에 의한 장소제한 또는 거처퇴거 등 임시격리조치 규정을 두고, 보호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민법적 보호명령(임시조치)가 발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과 법원의 보호조치가 마찰없이 서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또한 가정법원과 경찰과의 정보교환에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명령(임시조치)에는 각 해당여성의 여러 가지 위험 및 위협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의 경찰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행동지침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① 피해자-중심적 개입 : 피해자에 대해 이해심있고 주의깊은 태도를 가지고, 가해자와 희생자를 분리시켜 놓고 질문하며, 피해자에게 지원기관 및 민법적 보호내용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② 폭력가정 내 아동학대(이중폭력) 및 위협에 대한 관심: 그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확대보호를 위한 합당한 개입조치를 실행하며, 연령에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깊게 심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③ 철저한 증거확보 및 문서화(사진, 증인진술과 같은 물적 증거포함):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거나 설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이 개입한 사건의 경우엔 항상 상황을 문서로서 정리해 놓는다. 이러한 문서들은 경우에 따라 경찰의 재출동시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④ 가해자 책임인지적 개입: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행위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설사 피해자가 법적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를 원칙적으로 도입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가해자가 거처를 퇴거할 경우, 가해자의 연락가능한 주소를 알아둔다. 가해자상담 및 훈련(치료)에 대하여 알려주고 민법적인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민사법적 개입과 형사법적 개입의 상호 연동체계 구축** : 우리나라의 법적 개입절차를 선진 각국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① 가정폭력 소송과

정에 지역사회와 다기관 공동개입프로그램이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형사사법기관위주(특히 검찰)로 급격하게 소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 안전과 보호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규정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 ③ 이원적인 절차구조하에서 가정폭력이 형사절차로 다룰 때는 그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반폭력 범죄와 동일시 된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 개입과정은 피해자 안전과 향상된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구축에 초점을 두고 경찰이 법원 간에 직접적인 위기개입 채널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절차 흐름도를 보면 오히려 가해자 처분절차를 위주로 소송과정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진 각국의 주된 개입기관은 ‘검찰’ 보다는 ‘경찰’과 ‘법원’이 보다 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여기에 ‘사회사업기관 및 상담기관’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가령, 독일은 경찰기관내 “사회사업국”을 두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민사법원과의 조정하에 다기관 협력제안을 도출하고 있고, 검찰에 의한 사건처리는 형사절차보다는 Wagga 협회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피해자조정(VOM)’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Forum”을 중심으로 전문가적 개입·지원을 통해 사건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은 가정법원내 “위기개입센터”(미국) 등을 중심으로 각 피해자 욕구에 부응한 구체적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흔히 가정폭력은 다른 쟁송절차보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⁴⁾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과 임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해자 처벌을 빨리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삶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원접촉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가정폭력 특례법 제9조‘피해자 의사존중’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결정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심적 사항은 피해자 스스로 “법”을 권력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34) 특례법 제38조도 이를 선언하면서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 또는 이송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체계는 경찰의 위협예방조치와 더불어 민법적 개입과 형사법적 개입을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에도 특례절차규정을 통한 피해자 안전 및 보호장치 구축 등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유엔의 모범입법례에 따라 진정한 가정폭력특례법이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를 기본모델로 설정하고 여기에 민사적 보호명령 및 다양한 diversion, 그리고 적절한 보호·지원서비스가 적기에 작동될 수 있는 개입장치가 요구된다.

■ **법제도 정비 및 전환위탁 절차의 개발** : 치료적 개입이 모든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마술 상자는 아니지만, 특정한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구금전략 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치료프로그램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양형제도 및 실무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과 위탁절차규정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외국의 pre-trial 단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이 없고, 단순한 경미한 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환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정은 검사 재량권에 속한다. 소송절차상 전환처우를 위한 위탁절차와 각 프로그램 목표별 적격자 선별과정이 전혀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실무상 문제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부적격자가 상담위탁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에는 최소한의 법률적 기준요건을 마련해야 하고, 위탁을 위한 기초선별검사 및 치명성 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일단, 검사가 가해자 위탁의 법률적 적격성을 판단한 다음 치료개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임상적 스크린을 실시한다. 또한 “임상적 적격성” 판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임상적 진단과정을 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피의자가 치료프로그램에 적격하다면, 치료절차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서면자료를 제공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서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성공적 종료에 있어서 참가자 자발성과 의지는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종의 처분으로서 조건부 상담위탁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해자의 헌법적 권리(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 조건

부 기소유에 결정시 반드시 “자발성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2) 형사실무상 개선방향

■ **가정폭력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조사관 제도도입** : 경찰의 초기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① 가정폭력 전담반 또는 가정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Domestic Violence Enhanced Response Team)을 구성하고, ②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경찰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③ 사건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사지침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매뉴얼(Manual) 및 위험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 항시 휴대하여 응급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④ 제5조 응급조치 조항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전담관에게 후속개입을 하도록 조치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전 조사제도”의 실행이 매우 긴요하지만, 현재처럼 법원개입이 폭력발생이후 2-3달이 지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가정폭력에 대한 기초조사는 현실적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은 경찰과 협력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개입방법 및 처우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사회기반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각국의 가정폭력 대응정책은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multi 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1980년 후반부터 소개되면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에 처한 피해자 및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모든 기관 간에 포괄적이고, 조정된·조기대응이 가능한 정보공유 및 반응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형사사법체계, 주택 및 무숙자 관련기관 그리고 경찰이 포함된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된 정책구조, 포괄적인 훈련전략,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그

리고 전문스텝들의 적절한 배치 등이 요구된다. 외국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은 형사 및 민사 사법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동시에 여성의 필요와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찰의 비용이 감소되었고, 민·형사적 부담도 감소되었다고 한다.

형사사법절차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원호)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변호(outreach and advocacy)서비스의 확대는 가정폭력의 감소 및 위험방지에 도움이 된다. 별거기간 동안의 여성에 대한 후원과 사법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반복된 피해자화를 막을 수 있다. 전담경찰, 검사, 그리고 보호관찰관들과 접촉하는 민간의 상담보호단체들로 하여금, ① 가급적 빠른 기간에 피해자와 접촉개시하며, ②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를 변호하고, ③ 경찰과 검사를 위해 증거를 모으며, ④ 피해자 안전계획을 지원하고 위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⑤ 가해자와 관련된 사항(사건)들 및 다른 잠재된 위험요소들을 피해자에게 고지시키고, ⑥ 피해자 보고서를 통한 판결조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며, ⑦ 법원소송이나 보호관찰 해지청문회에서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일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가해자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선별검사의 제도화** : 형사사법 체계내 치료적 개입의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하나의 치료모형이 모든 가해자에게 다 적합한 것은 아니다. 효과적 치료적 개입 및 피해자 안전계획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와 위험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분류처우란 불가능하며, 상습성이 강한 특정 가해자에게 충분히 처벌적이지 않은 관대한 처우는 폭력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범죄예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위험집단이 누구인지를 판별하고, 이러한 목표집단(target group)의 위험요소(risk factor)를 제거하고 보호요소(protective factor)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절차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현행 치료프로그램에 적격한 대상자 선별을 위한 법률적

및 임상적 평가과정이 형사절차상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1) 적합한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 매칭, (2) 최소한 처우자원의 보다 효과적 이용을 가능케 하며, (3)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과 보호연속체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현행법상 조사관 제도 및 관련전문가 의견조회 등에 대한 입법적 장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 및 비용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³⁵⁾ 물론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배우자 재폭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 그에 적합한 처벌유형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폭력의 위험 평가 측정도구 및 구타자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³⁶⁾ 각국의 형사실무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우를 위하여, 사건초기에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콜로라도 보호관찰국에서는 SARA의 틀을 적용하여 가정폭력행동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고, 산타클라라 보호관찰국 역시 나름의 이론적·임상적 평가를 통하여 가정폭력 치명성 평가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네슈빌 경찰국은 [위험감소 및 안전계획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경찰청 역시 Risk Assessment Model 및 위험평가의 실무적용을 통해 가정폭력의

35) 현재의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신청서, 환경조사서 및 수사관련 조서방식은 가정폭력의 특성 및 위험성에 상응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경찰청에서 마련한 [가정폭력 수사요령]은 경찰관에게 보다 적극적 자세로 가정폭력사건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자료는 보호처분 등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가 됨을 인식, 가정환경·동기·원인·상습성·재발가능성 등이 수사기록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사(경찰청, 2001:52)”하라는 당위적인 주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서양식 및 항목의 구조화된 수준도 매우 미흡하다.

36) 최근 각국은 이들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형사사법프로그램에 수용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진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위험평가도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The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Kropp, Hart, Webster & Eaves, 1995)는 치료적 판단과 더불어 상습성이 없는 학대자와 상습학대자와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한 20개의 척도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결과는 위험가능성을 저·중·고 위험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Goodman과 동료들은(2000)에 의한 Danger Assessment Scale(DAS; Campbell, 1986)는 피해여성들의 살해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15개의 척도이다. ③ 이밖에도 The Conflict Tactic Scale(CTS; Straus, 1979), Index of Spouse Abuse(ISA; Hudson & McIntosh, 1981), Wife Abuse Inventory(WAI; Lewis, 1985), Severity of Violence Against Women Scale(SVAWS)/Severity of Violence Against Men Scale(SVAM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PMWI; Tolman, 1989) 등이 있다.

위험방지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형사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서양식의 개발,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위험성(risk assessment), 치명성(lethality), 가해자의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등 보호명령 발부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시비를 최소화하는 실무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및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분류처우를 선택, 처벌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이제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의 가치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았다.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Hart(1996)가 지적하듯이, 피해자들의 형사법적 호소에 대한 거리감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여부는 법체계가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으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조사연구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피해자의 관심은 처벌 그 자체 보다는 ‘폭력의 종식’에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에 도움을 요청하는 주된 동기는 법적인 개입이 더 이상의 폭력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크게 해주는 일종의 “확성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누군가 나의 폭력피해상황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법적인 개입은 실제적인 보호 그 이전에 피해여성들에게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심리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성공적인 가정폭력방지를 위해서 법률 시스템은 피해자-감응적 모델(victim sensitive approach model)을 발전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피해여성이 안전 및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경우, 범집행자들의 경직된 무성의한 일처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여성

의 사기를 쉽게 저하시킬 수 있다. 사법적 권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비난하거나 재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폭력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이와 반대로 경찰이나 법집행자들이 폭력피해자의 Trauma에 대해 감수성을 개발시키고,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긍정적인 언행을 보일 경우, 피해 여성은 폭력종식을 위한 자기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폭력 피해자의 욕구나 필요가 형사법적 체계나 그 대응논리와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집행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법적 개입을 요청했으면서도, 정작 피해여성 스스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 판사나 경찰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 경찰과 법원은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법원의 조치를 파기하고 다시 폭력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 폭력남성을 떠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필요한 한 단계(one step)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법률시스템은 피해 여성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 피해여성이 “이제 그만”을 외치게 되는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발행일 : 2008년 11월 28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9 4층

전 화 : 02-2269-2962

팩 스 : 02-2269-1823

이메일 : hotline@hotline.or.kr

홈페이지: www.hotline.or.kr